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

김지현·김자연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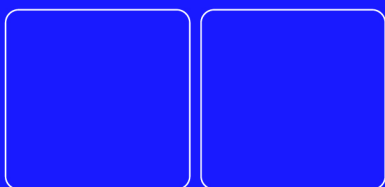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

김지현, 김자연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

| 김지현·김자연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해 발간하고 있는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는 각 나라의 최근 육아정책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계획되어 발간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일본의 보육정책동향을 시작으로, 스웨덴,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등 다양한 나라의 육아정책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정책사례와 실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008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호주의 육아정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의 변화해가는 정책 흐름을 통해 해외의 육아정책의 한 면을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들의 육아정책 동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의 독자들이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목차

CONTENTS

1장	호주의 일반적 특성 · 4 1. 개요 · 4 2. 인구사회학적 특성 · 7
2장	육아 및 가족 지원 · 12 1. 육아 및 가족 서비스 지원 · 12 2. 육아 및 가족 비용 지원 · 19
3장	보육 정책 및 제도 · 27 1. 관련법 · 27 2. 보육 정책 전달체계 · 33 3.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 · 35 4. 주요 사업 및 예산 · 38
4장	유아교육·보육서비스 현황 · 40 1. 유아교육·보육체계 개요 · 40 2.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 54 3.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질 관리 · 72
5장	맺음말 · 76
참고 문헌	· 78

호주의 일반적 특성

1. 개요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시리즈는 이번 호를 포함하여 모두 3회에 걸쳐 발간되었다. 2013년에 발간된 호주의 동향시리즈 2편 이후에 호주는 2018년에 아동돌봄패키지(Child Care Package)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은 호주의 일반적 특성과 제도, 육아정책 분야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면서 호주의 아동돌봄패키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가. 지리적 특성 및 역사

호주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은 호주 대륙 본토와 태즈메이니아섬(Tasmania),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주권국이며 오세아니아에서 1번째,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애버리진(Aborigine) 및 토레스(Torres) 해협 섬주민이 호주 원주민으로 18세기 말 유럽인들이 이주 이전 최소 40,000년 전부터 호주에서 살았다고 한다.

1606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호주대륙을 발견한 이후 1770년, 대영제국 왕국이 호주 동쪽 지역을 자기 영토로 삼았으며, 1788년 1월 2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의 식민지로 죄인들을 수송해 정착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민이 시작되었다.

전후 60년간의 이민수용계획으로 호주는 전 세계 200개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2019년 기준으로 대략 24만 명이 순이민 유입자로 자연 증가 인구인 13만 명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공식 언어가 없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를 쓰며¹⁾ 영어 이외에 가정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만다린 중국어(2.7%), 아랍어(1.4%), 베트남어(1.3%), 광둥어(1.2%), 편자브어(0.9%) 순이다²⁾. 이민 1세대나 2세대 상당수는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는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환경 보존과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GDP가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높고, 1인당 GDP은 6번째로 높은 대표적 선진국에 해당한다.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2위를 기록하였으며 삶의 질, 건강, 교육,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 행정 및 정치체제

역사적으로 호주는 1901년 1월 1일, 여섯 개 식민지가 연합하여 호주 연방을 설립하였으며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적용을 받아 행정적으로 영국과 분리되었다. 호주 법이 1986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영국 의회의 호주 내 입법권이 정지되었으며, 사법권도 호주 고등법원이 갖게 되면서 자주 국가가 되었다.

행정적으로 호주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 제도를 도입한 서구

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August 10). Snapshot of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eople-and-communities/snapshot-australia/latest-release> (2022. 7. 25. 인출)

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August 10). Snapshot of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eople-and-communities/snapshot-australia/latest-release> (2022. 7. 25. 인출)

식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연방정부로는 6개 주(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퀸즐랜드(Queenslan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태즈메이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와 2개 자치령(호주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성립 이후부터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호주 지도(6개주, 2개 자치령)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전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방 의회는 51조에 명시된 영역 내에서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의회는 교육, 형법, 주 경찰, 보건, 운송 및 지방 정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의회는 이러한 분야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연방법은 역설적으로 주법보다 우위에 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 정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영연방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 내에서 특정 입법 안건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을 제공한다.

각 주와 자치령에는 각각의 의회가 있으며 각 주의 정부 수반은 총리이고 각 자치령의 수반은 지사이다. 연방 의회는 애시모어 카르티에 제도(Ashmore and Cartier Islands), 호주령 남극 준주(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크리스마스섬(Territory of Christmas Island), 코코스섬(Cocos Island), 산호해섬(Coral Sea Islands, 허드섬과 맥도날드섬(Heard Island and McDonald Islands), 저비스 베이 준주(Jervis Bay Territory) 등의 외부 지역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매킨리섬(Macquarie Island)은 태즈메이니아(Tasmania)³⁾, 로드 하우스섬(Lord Howe Island)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가 관리한다⁴⁾.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인구

2021년 기준 호주의 전체인구는 약 2,573만 명으로 대부분 동쪽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도시화 비율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다.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는 18.5% 수준이며 이 비중은 출산율 하락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경향은 5세 미만 아동의 비중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3) Britannica. (2019, June 13). Macquarie Island, <https://www.britannica.com/place/Macquarie-Island> (2022. 7. 25. 인출)

4) Britannica. (2017, December 28). Lord Howe Island, <https://www.britannica.com/place/Lord-Howe-Island> (2022. 7. 25. 인출)

〈표 1-1〉 호주의 전체 인구 및 0~14세 인구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24,601,860	24,982,688	25,365,745	25,693,267	25,738,142
0-4세	6.4	6.3	6.2	6.0	5.9
5-9세	6.5	6.4	6.4	6.3	6.4
10-14세	6.0	6.1	6.1	6.2	6.3
0-14세	18.9	18.8	18.7	18.6	18.5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March 17). National, state and territory population,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national-state-and-territory-population/sep-2021> (2022. 6. 24. 인출)

호주의 인구증가 추이는 2019년 기준으로 대략 24만 명이 순이민 유입자로 자연증가인구인 13만 명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2021년에는 호주에서 이민을 나가는 인구수가 더 커 순이민 유입자의 규모는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2021년에 매우 뚜렷하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이전 시점부터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호주의 인구성장률은 2019년 기준 1.5% 내외를 차지한다.

〈표 1-2〉 호주의 인구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전체인구	출생	사망	자연증가	순이민 유입자	전체 인구 증가	인구 성장률	전체증가 대비 순이민 유입자 비율
2015	23,984.6	306.3	157.3	149.0	186.7	335.7	1.40	55.62
2016	24,389.7	311.8	158.6	153.2	243.8	397.0	1.63	61.41
2017	24,773.4	305.2	163.2	142.0	241.7	383.7	1.55	62.99
2018	25,171.3	304.1	158.4	145.7	252.2	398.0	1.58	63.38
2019	25,558.0	304.0	165.0	139.0	247.6	386.6	1.51	64.05
2020	25,683.6	291.9	160.9	130.9	-5.3	125.6	0.49	-4.19
2021	25,750.2	303.7	167.5	136.2	-67.3	69.0	0.27	-97.61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March 17). National, state and territory population,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national-state-and-territory-population/sep-2021> (2022. 6. 24. 인출)

나. 출산율

1960년대에서 최근까지 호주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특정 기간에 상승한 시점도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다.⁵⁾ 호주의 인구통계학자 리즈 앨런에 따르면 호주의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 및 고용 증가로 인해 가정(결혼)을 늦게 시작함에 따라 출산 자녀수가 줄어들고, 무자녀, 비혼의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⁶⁾ 호주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연도에 따라 1960년 3.5, 1970년 2.9, 1980년 1.9, 1990년 1.9, 2000년 1.8, 2010년 1.9, 2015년 1.8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20년 호주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58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불안감,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져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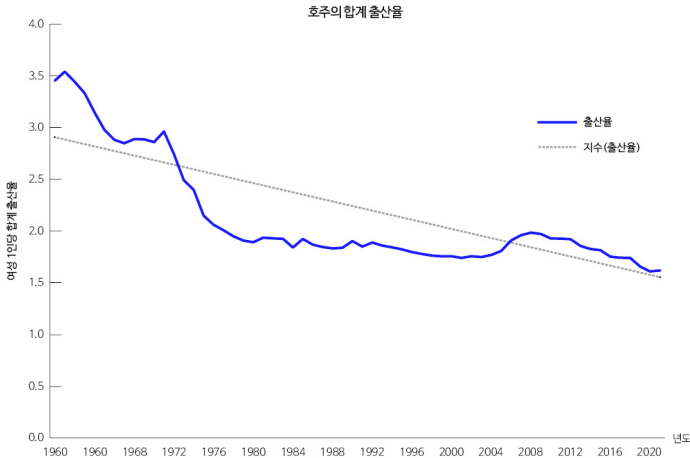
이러한 인구 및 출산율 감소 추세를 극복하고자 호주 정부는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⁷⁾을 통해 도시와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5) 호주의 1960~2020년까지 출산율에 대해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추세를 파악하였으며 호주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6) 한호일보(2021. 8. 25.). 호주 출산율 역대 최저.. "정책 방안 마련 시급", <http://www.hanh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53> (2022. 7. 25. 인출)

7)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은 a)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b) 주거 환경 개선 및 SO 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서비스 개선, c)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 d) 일자리 창출, e) 해외 이주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 f) 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g) 2019~2020년도 호주 연방예산 편성에 반영 등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The Public News(2021. 1. 21). [정책-외국정책사례]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시사점,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3>, 2022. 7. 25. 인출).

[그림 1-2] 호주의 출산율(1960~2020)



주: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당 총 출산아수를 의미함.

2) 지수(출산율)는 지수분포함수를 가정하여 연도별 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전반적인 출산율 추세를 나타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n.d.). Total fertility rate, 1932 to 2020(a),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births-australia/2020> (2022. 9. 7. 인출)

다. 취업 및 실업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호주 통계청 자료를 통해 15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의 취업 및 실업 규모 추이를 살펴보았다. 부부 혹은 파트너로 이루어진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가구 특성이나 종일제 혹은 시간제 고용과 상관없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19와 연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년 12월 기준으로 다시 예년과 유사한 고용규모와 고용률, 실업률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정책들이 이와 높은 연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3〉 호주의 고용 및 실업 규모(2015~2022)

단위: 천 명, %

구분	산출 시점 (년, 월)							
	2015.12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6
전체 고용 규모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남편, 아내, 파트너	3280.1	3316.2	3421.8	3571.1	3567.4	3699.4	3735.3	3748.8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282.3	313.2	317.2	339.6	355.5	318.3	364.5	358.0
종일제 고용 규모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남편, 아내, 파트너	2326.4	2385.4	2467.0	2583.9	2562.9	2677.6	2722.4	2749.7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151.6	161.6	173.8	191.9	193.4	168.3	204.1	210.7
시간제 고용 규모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남편, 아내, 파트너	953.7	930.8	954.8	987.2	1004.5	1021.9	1013.0	999.1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130.7	151.6	143.4	147.7	162.1	150.0	160.4	147.4
인구 대비 고용률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남편, 아내, 파트너	78.7	80.3	81.3	82.6	81.9	82.3	83.8	84.4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54.2	54.0	58.3	59.3	62.9	63.4	66.6	67.9
전체 실업 규모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남편, 아내, 파트너	106.3	103.3	100.2	79.0	103.5	133.1	76.6	79.2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46.0	44.7	33.6	39.2	28.5	28.6	23.9	20.5
실업률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남편, 아내, 파트너	3.1	3.0	2.8	2.2	2.8	3.5	2.0	2.1
[15세 미만 아동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14.0	12.5	9.6	10.4	7.4	8.2	6.1	5.4

주: 파트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동의 부모를 일컫음.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July 21).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 Relationship in household - FM4 - Unemployed persons by duration of job search and relationship in household, January 1991 onwards (pivot table).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detailed/latest-release#relationship-in-household> (2022, 7. 21. 인출).

육아 및 가족 지원

1. 육아 및 가족 서비스 지원

호 주의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로, 개인과 가족의 더 나은 복지제공을 목적으로 가족과 아동,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안전, 주거지원 및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과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각종 수당 지급과 세금 혜택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아동 양육을 위한 추가 지원이 있다. 자녀 양육비(가족세제혜택), 부모 지원(육아휴직급여, 아버지 및 파트너급여), 청년자립 생활수당이 그에 해당된다.

가. 유급 육아휴직 제도 종류

호주의 첫 국가 제공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2010년 육아휴직법에 의해 도입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모가 신생아 또는 최근에 입양된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육아휴직 제도는 휴직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호주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도록 지원한다. 정규직, 시간제, 일시직(seasonal), 계약직, 자영업자 등이 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로는 육아휴직 급여와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가 있다.

1) 육아휴직 급여

육급 육아휴직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또는 입양 자녀의 주 양육자 여야 하고 ‘(1) 신생아의 생모, (2) 입양을 위해 승인된 제1차 양육자, (3) 예외적 상황(아동 학대 등)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경우’의 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최근에 입양한 부모 중 일하는 부모에게 국가 최저임금 비율로 최대 18주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불은 고용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원 자격으로는 소득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모 중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전 13개월 기간 중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일을 해야 하며, 10개월 동안 최소 33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워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10개월의 기간 중 근무일 사이에 12주 이상의 일을 쉬거나 일을 안 한 간격이 있으면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또한, ‘잡키퍼(JobKeeper) 지원금’⁸⁾ 및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간주되며, 만약 고용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를 통해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정부의 행정기관(이전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으로, 비용 및 서비스 지급 관련 전달체계 대행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8) JobKeeper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직원의 임금 비용을 충당하여 더 많은 직원이 직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지원제도임.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지속되었고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 지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2주마다 \$1,500의 지원금을 지급받음(Australian Government. (2020, April 25). JobKeeper Payment: Supporting businesses to retain jobs,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0-04/Fact_sheet_supporting_businesses_0.pdf, 2022. 7. 29. 인출).

〈표 2-1〉 호주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용

급여 제공기간	최대 18주
조건	- 신생아 또는 입양된 자녀의 주 양육자 - 소득 기준 충족 : 2019-20년 회계연도 기준세금 납부 전 개인 소득이 150,000AUD 이하인 경우 : 2020-21년 151,350AUD 이하 : 2021-22년 156,647AUD 이하 - 유급 휴가 불가 - 근무일수 충족
지원 급여	세전 812.60AUD/주 ⁹⁾

자료: 1) Services Australia. (2022, November 17). Parental Leave Pa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parental-leave-pay> (2022. 11. 29. 인출)

2) Services Australia. (2022, November 11). Meeting the income test: To get Parental Leave Pay, you must meet an income tes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meeting-parental-leave-pay-income-test?context=22191> (2022. 11. 11. 인출)

3)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1). How much you can get: Parental Leave Pay is based on the weekly rate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You can get it for up to 18 weeks, which is 90 payable day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parental-leave-pay-you-can-get?context=22191> (2022. 7. 29. 인출)

2)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는 2013년 1월 1일에 새롭게 도입된 급여 제도로 아버지나 파트너가 새로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자격이 있는 맞벌이 아버지나 파트너에게 국가 최저임금의 비율로 최대 2주까지 급여를 제공한다. 정규직, 시간제, 일시직(seasonal), 계약직,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무급휴가 중이거나 일을 하지 않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한 근무일수 충족은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시간 조건이 적용되며, 자녀의 출생 혹은 입양 후 52주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9) 2022년 7월 1일부터 호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21.38AUD로 인상됨(Australian Government. (2022, July 15). Employees pay, leave and entitlements, [14 •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https://business.gov.au/people/employees/employees-pay-leave-and-entitlements#:~:text=The%20national%20minimum%20wage%20is,are%20covered%20by%20an%20award,2022.7.22.인출).</p>
</div>
<div data-bbox=)

〈표 2-2〉 호주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 지급 내용

급여 제공기간	최대 2주
조건	- 신생아 또는 최근 입양된 자녀를 돌보는 조건 - 소득 기준 충족 : 2019-20년 회계연도 기준세금 납부 전 개인 소득이 150,000AUD 이하인 경우 : 2020-21년 151,350AUD 이하 : 2021-22년 156,647AUD 이하 - 유급 휴가 불가 - 근무일수 충족
지원 급여	세전 812.60AUD/주

자료: 1)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2). Dad and Partner Pa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dad-and-partner-pay> (2022. 8. 25. 인출)

2)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5). Meeting the income test: To get Dad and Partner Pay you must meet an income tes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meeting-income-test-for-dad-and-partner-pay?context=22136> (2022. 8. 25. 인출)

나. 유급 육아휴직 제도 관리¹⁰⁾

1) 유급 육아휴직 제도 검토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3년 검토 및 평가를 시행하였다. 주된 검토 내용으로는 (1) 신생아나 최근 입양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 양육자가 취하는 휴무시간, (2) 고용주에게서 지급받는 급여의 금액, (3) 근무 일수 충족, (4) 주 신청자의 파트너의 동반 육아휴직 급여수급 필요성도 주 신청자와 더불어/별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5) 고용주의 육아휴직 급여연금납부 의무 여부, (6) 관련법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검토 등이 있다.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평가

유급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는 퀸즐랜드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이끄는 전문가 단체가 수행하였다(Martin et al., 2014). 이용자가족 및 고용주와의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

10)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4, June). Paid Parental Leave scheme: Review Report, https://www.dss.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06_2014/paid_parental_leave_scheme_review_report.pdf (2022. 7. 22. 인출)

였다.

검토 및 시행 평가 결과, 유급 육아휴직 급여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새롭게 입양한 가족, 고용주 모두에게 효과적이었으며 등록 용이성과 지불 용이성에 관한 고용주의 답변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 유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산모는 출산 후 첫 6개월 동안 직장복귀를 늦추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으며,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동일한 고용주와 다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 유급 육아휴직 제도 변경사항¹⁾

2022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 보육지원금 부분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변경되었다.

1) 근무일수 충족 면제 특별 상황(Special circumstance expectations to work test)

육아휴직 급여와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가족 내의 폭력이 있거나, 신청자나 신청자가 돌보는 직계가족에게 심각한 질병이 걸린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준 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면제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기관인 Family Line에 연락하여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 아동보육지원금 자원 인상 및 연간 한도제 폐지(Higher Child Care Subsidy and removal of the annual cap)¹²⁾

보육지원금(Child Care Subsidy, CCS)에 대한 변화는 2021년 12월 10

11) Services Australia. (2022, November 29). Changes if you get family payment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hanges-if-you-get-family-payments?context=22191#:~:text=On%201%20July%202023%2C%20Parental,130%20days%20\(26%20weeks](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hanges-if-you-get-family-payments?context=22191#:~:text=On%201%20July%202023%2C%20Parental,130%20days%20(26%20weeks) (2022. 11. 29. 인출)

12)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October 10). Higher CCS for multiple children and removal of an annual cap,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higher-ccs-multiple-children-and-removal-annual-cap> (2022. 11. 29. 인출)

일부터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보육지원금의 연간 한도가 사라지고 2022년 3월 7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이전에는 소득이 190,015AUD(2021~22년 회계연도 기준) 이상인 가정의 각 회계연도 자녀 1인당 연간 지원금 상한선이 10,655AUD이었으나, 이 지원금 상한선을 2021년 12월 10일부로 폐지한 것이다. 보육지원금의 연간한도 폐지는 2021-22년 회계연도 시작인 2021년 7월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며, 보육지원금은 가정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또는 보육 시설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3) 코로나19 지원금과 근무일수 충족¹³⁾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육아휴직 급여나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데,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일수 충족에 영향을 받았다면, 잡키퍼(JobKeeper)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두 지원금 역시 근무일수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초창기 코로나19 지원금은 팬데믹 휴직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으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인이나 부양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무자가 격리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일주일에 최소 8시간의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청구 기간 첫날 10,000AUD 미만의 유동 자산이 있는 경우 (유동 자산은 현금이나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함)

13) Services Australia. (n.d.).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pandemic-leave-disaster-payment> (2022. 10. 31. 인출)

라. 산모 유아 가정 방문 지원 프로그램(The 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program)¹⁴⁾

산모 유아 가정 방문 지원 프로그램(Maternal Early Children Sustained Home-visiting, MECSH)은 모자 건강 및 발달 결과 악화 위험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이익, 정신건강 문제, 가족폭력, 자신이나 자녀에 대한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사전 참여 등 다양한 역경을 겪고 있는 엄마와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안으로 개발되었다. MECSH 프로그램은 모든 유형의 양육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주로 친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 전이나 출생 시에 이루어진다. 유아는 보통 산전 예약 방문부터 퇴원 후 6~8주 이내에 등록된다.

산모 유아 가정 방문 지원 프로그램은 호주 시드니의 일차보건 및 형평성 센터(Centre for Primary Health Care and Equity)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센터의 연구는 건강 불평등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설명과 측정, 건강 형평성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 및 기타 조치의 개발과 평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건 시스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모 유아 가정 방문 지원 프로그램은 ‘불빛’을 의미하는 Beacon 프로그램의 일부로, Beacon 프로그램은 현재 영유아와 영유아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호주에서 두 번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14) Transforming early Education And Child Health Research Centre. (n.d.). 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 Visiting (MECSH) Program, https://www.westernsydney.edu.au/teach/research/beacon_2/maternal_early_childhood_sustained_home_visiting_mecsh_and_right_at_home (2022. 10. 31. 인출)

2. 육아 및 가족 비용 지원

가. 혜택 및 지원금 지급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부터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10대 후반까지 자녀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1) 조부모 양육자를 위한 지원(Support for grandparent carers)¹⁵⁾

호주에서는 조부모 양육자(grandparent carers), 즉 조부모로서 손자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 양육자에게 비용 지원을 제공한다.

조부모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소 일 년 중 35%(즉, 일 년에 128일 이상, 2주에 5일 이상 보내는 경우)의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FTB) 부문 A와 가족세제혜택 부문 B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호주 정부에서 양육가정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동의 친조부모, 입양 조부모, 양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그리고 아동의 법적 후견인의 조부모 등이 해당된다.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보험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부모나 부모가 아닌 양육자를 돕는 조언자를 이전에는 조부모 조언자(parent advisor)라고 칭했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조부모·위탁·친척 양육 조언자(Grandparent, Foster and Kinship Carer Adviser)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조부모 양육자(grandparent care), 위탁 양육자(foster carer), 친족 양육자(kinship carer) 등 부모가 아닌 양육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자의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15)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10). Support for grandparent carer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support-for-grandparent-carers?context=22151>(2022. 8. 10. 인출)

2)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FTB)

가족세제혜택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가족세제혜택 부문 A와 부문 B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가족세제혜택 부문 A¹⁶⁾

가족세제혜택 부문 A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으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학교를 입학하기 전 필요한 건강 검진을 마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파트 A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파트 A의 기본 지원금은 2주에 자녀 한 명 당 63.56AUD이지만 이 금액이 최저 지원 금액은 아니며, 소득 공제 전 가정의 연간 소득이 높다면 기본 지원금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표 2-3〉 가족세제혜택 부문 A 최대 지원금액

나이	비용
0~12세	197.96AUD
13~15세	257.46AUD
16~19세의 중·고등학생	257.46AUD
0~19세의 요보호 아동	63.56AUD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6). FTB Part A payment rat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payment-rates?context=22151> (2022. 8. 2. 인출)

가족세제혜택 부문 A의 경우, 부양 자녀의 수와 가족 소득에 의해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녀 부양의 조건은 1) 0~15세의 자녀를 부양할 경우, 2) 16~19세의 아동을 부양할 경우는 아동이 전일제 학생이거나, 특정양의 학습량을 채우거나, 국가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3) 최소 35%(일 년에 128일 이상) 기간 동안 자녀를 돌봐야 하는 조건이

16)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1). FTB Part A eligibil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eligibility?context=22151> (2022. 8. 2. 인출)

있다.¹⁸⁾

가족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규칙(Residence rules)을 고려해야 하는데,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특별 비자 소지자, 파트너 임시비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와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한다. 호주에 이민을 오면서 지원 자격이 되는 부모의 경우, 부문 B 지원금은 대기 기간이 없이 진행되는 데에 반해 부문 A에 해당 하는 지원금은 호주 도착 후 1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¹⁹⁾

부모 중 한 명이 소득 지원 수당(Income support payment)을 받는 경우 부문 A의 최대 지원 금액 수혜가 가능하며,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 범위가 달라진다.²¹⁾

(1) 연간 소득 58,108AUD 이하

가족의 소득 공제 전 연간 소득이 58,108AUD 이하인 경우, 부문 A의 최대 세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간 소득 58,108AUD~103,368AUD 사이

소득 공제 전 연간 소득이 58,108AUD에서 103,368AUD 사이인 경우, 58,108AUD 이상의 소득 1달러당, 부문 A의 지원금을 20센트씩 감액하여 지급받으며, 최저 지원 금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감액하지 않는다. 최저 부문 A 지원 금액은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소득 58,108AUD~103,368AUD 사이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은 <표 2-4>에 제시하였다.

18)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1). FTB Part A eligibil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eligibility?context=22151#study> (2022. 8. 2. 인출)

19) Services Australia. (2022, March 3). Residence rules: On the day you claim Family Tax Benefit Part A and Part B you must meet the residence rul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sidence-rules-for-family-tax-benefit?context=22151> (2022. 11. 21. 인출)

21) Services Australia. (2022, September 7). Income test for FTB Part 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test-for-family-tax-benefit-part?context=22151> (2022. 11. 21. 인출)

〈표 2-4〉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지원금(58,108AUD~103,368AUD)

소득	자녀 연령	소득 한도
한 자녀	0~12세	75,628AUD
	13~15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83,385AUD
두 자녀	두 자녀 모두 0~12세	93,148AUD
	한 자녀가 0~12세 이고, 다른 한 자녀가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00,905AUD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2, September 7). Income test for FTB Part 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test-for-family-tax-benefit-part?context=22151> (2022. 11. 21. 인출)

부문 A 지원금의 최저액은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3자녀 이상의 가정인 경우, 최저 지원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최저 지원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며, 주거지원을 받을 경우는 소득한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다.

(3) 연간 소득 103,368AUD 이상

소득 공제 전 연간 소득이 103,368AUD 이상의 가정의 경우, 소득 1달러 당, 부문 A의 지원금을 30센트씩 감액한다.

〈표 2-5〉 자녀수와 연령에 따른 지원금(연간 소득 103,368AUD 이상)

소득	자녀 연령	소득 한도
한 자녀	0~12세	108,892AUD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08,892AUD
두 자녀	두 자녀 모두 0~12세	114,416AUD
	한 아동이 0~12세 이고, 다른 한 아동이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14,416AUD
	두 자녀 모두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17,944AUD
세 자녀	3자녀 모두 0~12세	124,806AUD
	2자녀는 0~12세, 한 자녀는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29,977AUD
	1자녀는 0~12세, 2자녀가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35,148AUD
	3자녀 모두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40,319AUD
네 자녀	3자녀가 0~12세, 한 아동이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47,181AUD

소득	자녀 연령	소득 한도
	2자녀가 0~12세와 나머지 2자녀가 13~15세 또는 16~19세인 중·고등학교 학생	152,351AUD
	1자녀가 0~12세, 3자녀가 13~15세 또는 16~19세인 중·고등학교 학생	157,522AUD
다섯 자녀	3자녀가 0~12세, 나머지 2자녀가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69,555AUD
	2자녀가 0~12세, 나머지 3자녀가 13~15세 또는 16~19세의 중·고등학교 학생	174,726AUD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2, September 7). Income test for FTB Part 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test-for-family-tax-benefit-part?context=22151> (2022. 11. 21. 인출)

6자녀 가정이면서 각 연령대에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191,930AUD에 도달하면 부문 A를 지급하지 않고, 아동의 연령이, 만 0~12세, 13~19세(중고등학생인 경우)에만 부문 A를 지급한다.

부문 A 추가 지원금은 가정의 연간 소득이 80,000AUD 이하인 경우 해당 되는데, 부문 A 지원금을 받고 연간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양육 아동의 수, 가정의 연간 소득, 부문 A의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2~23년 회계연도의 경우 자격이 되는 가정에 최대 아동 한 명당 817.60AUD가 지원될 수 있다.

나) 가족세제혜택 부문 B²³⁾

가족세제혜택 부문 B는 한부모, 부모가 아닌 양육자, 조부모 양육자나 가정 내 주 소득자가 한 사람이면서²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 수혜를 위한 비자 조건은 부문 A와 동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 시간 조건도 같다.

2주마다 지불되는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0~5세일 경우 168.28AUD,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5~18세일 경우 117.46AUD이다.

한부모 또는 외벌이 부모의 연간 소득이 104,432AUD를 초과하는 경우

23)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24). FTB Part B eligibil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b-eligibility?context=22151> (2022. 8. 2. 인출)

24) 다른 부모 한 명이 보조 소득자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음. 연간 6,059AUD 이하의 소득. 그 이상은 감액됨.

부문 B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이 104,432AUD 이하인 경우에는 부문 B의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가 끝날 때까지 지원된다. 가장 어린 자녀가 16~18세 사이인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²⁵⁾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가 아닌 양육자의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3) 청년 자립 생활 수당²⁶⁾

청년 자립생활 수당은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²⁷⁾에서 독립하는 15~24세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최대 1,500AUD까지 지급된다. 실제 자립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교육 및 직업 훈련과정, 의료비와 주거 보증금, 운전면허 시험비, 정신 상담 비용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비용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수당은 보호 기간 만료 이후, 기존의 가정 외 보호 제공자(양육자)와 함께 사는 생활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나. 아동·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 가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5)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1.). Income test for FTB Part B,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test-for-family-tax-benefit-part-b?context=22151> (2022. 8. 2. 인출)

26)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December 2.).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llowance,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benefits-payments/transition-to-independent-living-allowance-tila> (2022. 12. 2. 인출)

27) 가정 외 보호 (Out-of-home-care)는 원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 양육자나 그룹홈 또는 친족이 일정기간동안 돌보는 지원체계를 말함.

1) 아동 지원 서비스²⁸⁾

호주 정부는 1988년 별거나 이혼 중인 부모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다른 한쪽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아동 지원 제도(Child Support Scheme)를 수립하였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위탁자/양육자가 12개월 이상 아동 양육에 35%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건은 가족세제혜택 부문 A 지원금에도 영향을 준다. 양육비는 개인적으로 또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양육비 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지급 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공제
- 세금 환급 차단: 은행과 같은 제3기관으로부터 징수/지급
- 사회 보장 및 기타 정부 지급금에서 공제
- 부채를 갚지 않거나 적절한 지불 방안이 없는 경우 출국 금지 조치
-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

2) 성적학대 보호 프로그램 및 생후 첫 지원 서비스²⁹⁾

아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크게 아동 성적학대 보호 프로그램과 사법 프로그램 및 ‘생후 첫 1,000일 지원 서비스(The First 1,000 Days)’가 있다.

호주에는 아동의 성적학대 보호를 위한 센터들이 있는데, 아동 성적학대 예방을 위한 국립 센터(Nation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28)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September 22). Description of the Child Support Scheme,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child-support/the-child-support-scheme> (2022. 11. 21. 인출)

29)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February 5). Children – Programs & Services,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children> (2022. 8. 2. 인출)

Sexual Abuse)는 학대피해 아동의 낙인을 줄이고, 도움 요청 증진과 모범사례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성적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지원 센터이며,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의 아동의 보호 및 감금에 관한 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the Protection and Detention of Children in the Northern Territory)는 노던 준주의 아동이 청소년 사법 제도나 아동보호 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된 왕립 위원회이다.

또한, ‘호주 아동보호(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는 호주에 거주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생애 첫 1,000일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는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다.

보육 정책 및 제도

1. 관련법

호 주에는 보육서비스에 관한 연방법과 주 및 준주 법이 있다. 연방법은 보육서비스의 재정 지원 및 지원 자격에 관한 법률이며 주 및 준주 법은 아동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이다.

가. 1972년 아동보육법(Child Care Act, 1972)³⁰⁾

1972년 제정된 아동보육법은 승인된 보육시설의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아동 보육 및 건강에 관한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직원 고용의 장려와 같이 아동 보육의 품질에 관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아동보육법은 아동 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장소 규명, 시설 운영에 대한 조건 및 시설 설치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자본 교부금(Capital Grants), 적격 직원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 교부금(Recurrent Grant), 아동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 교부금(Research Grants)을 지원하고, 자문에 관한 조항을 담당하는 보육 기준위원회(Child Care Standard Committee)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30) Child Care Act 1972, No. 121, 1972 (1972).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512> (2022. 8. 2. 인출)

나.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

(A 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 Act 1999)³¹⁾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은 가족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5장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기존의 가족 지원 지불 방식을 12개에서 3개로 줄이는 새로운 구조 도입과 함께, 1991년 사회 보장법에서 명시한 출산 수당을 이 법에 포함하면서 모든 종류의 가족 지원 혜택이 하나의 법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가족 지원 지불 방식은 1) 가족이 아동 보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가족세 제혜택(FTB) 부문 A, 2) 외벌이 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지원을 위한 가족세제혜택(FTB) 부문 B가 있다.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은 이에 해당하는 세부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규명하고 있다. 모든 가족 지원 수혜자는 센터링크 또는 호주 국세청(ATO)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동일한 자격 규칙 및 지급 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각 지불에 대한 자격 기준은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에 규명되어있다.

다.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행정)(A 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Administration) Act 1999)³²⁾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이 시행된 그 다음해인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이 법은 사회 보장시스템과 세금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구조와 전달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이는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급여 청구, 청구 결정, 급여 지급, 수령인 의무, 지급 종료 및 검토 프로세스와 같은 문제를 규율하는 행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1) A 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 Act 1999, No. 80, 1999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2C00125> (2022. 8. 2. 인출)

32) Department of the Parliamentary Library. (1999, June 24). Bills Digest No. 205 1998-99 A 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 (Administration) Bill 1999,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9899/99bd205 (2022. 8. 2. 인출)

라. 2017년 가족 지원 법률 수정안(가족을 위한 일자리 보육 패키지)(Family Assistance Legislation Amendment (Jobs for Families Child Care Package) Act 2017³³⁾)

2016년 사회 서비스 법률 수정안(가족 수당 구조 개혁 및 참여 조치) 법안과 함께 도입된 ‘2017년 가족 지원 법률 수정안’은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 지원) 및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행정)의 수정된 부분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돌봄베네핏(Child Care Benefit, CCB) 및 아동보육리베이트³⁴⁾(Child Care Rebate, CCR)의 중단과 소득 및 활동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보육지원금(CCS) 도입과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보육지원금(Additional Child Care Subsidy, ACCS)을 도입하였다. 보육지원금(CCS) 및 추가 보육지원금(ACCS) 청구, 결정 검토, 신청자 승인, 승인된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수정된 법안의 내용을 규명하고 있으며,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에 따라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의 세부 사항과 일정에 관한 부분, 장관의 결정의 적용, 채택 등이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행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과 아동돌봄베네핏(CCB) 서비스 승인 소급 지속적인 승인에 대한 보육서비스 조건의 재평가 및 등록 진행 중단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1999년 신조세체계법(상품 및 서비스세), 2013년 초기 품질 기금 특별 계정법, 1986년 부가 혜택 세금 평가법 및 1997년 소득세 평가법의 수정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마. 2017년 보육지원금 장관 시행 규칙 (Child Care Subsidy Minister's Rules 2017)³⁵⁾

보육지원금(CCS) 장관 시행 규칙은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

33) Family Assistance Legislation Amendment (Jobs for Families Child Care Package) Act 2017 (2017).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A00022> (2022. 8. 2. 인출)

34) 직역하여 의미전달이 어려운 표현에 대해서는 원어 그대로를 사용함.

35) Child Care Subsidy Minister's Rules 2017 (2017, November 7).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L01464> (2022. 8. 2. 인출)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행정), 2017년 가족 지원 법률 수정안(가족을 위한 일자리 보육 패키지(Family Assistance Legislation Amendment (Jobs for Families Child Care Package) Act 2017)의 각 하위 항목에 의해 만들어졌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지원금과 추가 아동 보육지원금의 자격 및 지원금액의 양, 보육서비스 제공자 승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요건, 사업 지속을 위한 지원금 제공, 가족법과 직업법에 대한 경과에 관한 법률 등이 정리되어 있다.

바. 1999년 사회 안전 보장법(행정) (Social Security(Administration) Act 1999)³⁶⁾

1999년에 제정된 사회 보장법(행정법)은 사회 보장법의 시행 및 관련 목적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노령 연금, 장애 지원 연금 및 아동 장애 지원 수당, 간병 수당 및 양육 수당, 청소년 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사회 보장(행정)법은 지원금의 지불 목적과 양허의 목적, 추가 지원의 목적에 대해 규명하며, 지불 방법 체계와 지원금 지불의 타당성에 대해 규정한다. 이 외에도 각 지원금 수혜자의 자격요건과 적격 소득기준에 따른 지불금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국가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위기 지원금 지불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³⁷⁾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행정)법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특별 비자 소지자를 위한 법률이나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사회보장 협정을 통하여, 호주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급여 및 보험에 관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 수 있게 하고 있다.

36)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 No. 191, 1999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2C00204> (2022. 8. 2. 인출)

37)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국가 보건 비상 위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 변경 사항을 추가함.

사. 2010년 유급 육아휴직법(Paid Parental Leave Act 2010)³⁸⁾

2010년에 제정된 유급 육아휴직법은 신생아 또는 새롭게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육아 휴직 급여와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최대 18주의 기간 동안 호주 최저 임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고,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는 최대 2주간의 기간 동안 수혜 가능한 일회성 급여이다. 급여 지급 기간은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유급 육아휴직법의 각 장에는 지급 자격 조건과 지급 방법, 불만 제기, 법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급여는 사회 서비스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급여 수혜자는 근무시간 충족과 소득 및 거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아동의 주 양육자여야 하며, 일하지 않는 상태여야 지급 가능하다. 유급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아닌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고용주가 유급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만약 고용주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어 워크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0년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근무시간 충족 조건 및 파트너에게 급여제공 여부와 고용주의 연금 납부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20년에는 최대 18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처음 12주와 나머지 6주로 나누어 출산 및 입양 후 2년 이내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두 기간으로 나누어 휴직하게 될 경우에 두 번째 휴직기간 급여는 고용주가 아닌 청구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최근 여성의 경제적 안정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가 대두되어, 유급 육아휴가 급여 상승 및 기간 연장과 휴가 기간에도 고용주의 연금 납부요청과 성 중립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안전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8) Paid Parental Leave Act 2010, No. 104, 2010 (2010).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1C00447> (2022. 8. 2. 인출)

아. 2018년 아동 양육비(등록 및 징수)규정(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s 2018)³⁹⁾

아동 양육비 책임의 등록 및 징수, 법원 명령, 법원 등록 계약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행정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규명하던 1988년 아동 양육비(등록 및 징수)법이 2018년 4월부로 폐지되고 2018년 아동 양육비(등록 및 징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아동 양육비(등록 및 징수) 규정은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의무의 등록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27조 내용인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아동권리협약(CRC) 제27조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능력(예: 재정 부문) 내에서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국가는 부모와 아동 보호자가 이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년 아동 양육비(등록 및 징수) 규정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보호자에게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보장하여,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9) 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s 2018 (201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C00501> (2022. 8. 2. 인출)

2. 보육 정책 전달체계

가. 행정 및 전달체계의 개요

2007년도에 설립된 호주의 보육 주무 부처는 가족, 주택,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관련 부서(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로서, 캔버라 그린웨이에 위치한 호주 정부 기관이었다. 이전의 가족,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관련 부서(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가 이 부서로 통합되면서 더 많은 부분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다. 2013년 9월 18일에 발행된 행정 배치 명령의 결과로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설립되어 FaHCSIA의 대부분의 책임을 맡았으며, 원주민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총리 및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가 담당하게 되었다.

영연방 정부라고도 알려진 호주 정부는 연방 의회 입헌 군주제인 호주의 중앙 정부이다. 다른 웨스트민스터 스타일의 영국식 정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는 행정부(수상, 장관, 정부 부처), 입법부(호주 의회), 사법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아동 교육과 보육을 위한 가족 지원은 행정부 소속의 두 정부 기관(교육부, 사회서비스부)에서 담당한다. 아동의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금은 교육부가 담당하며, 아동 보육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수당은 사회서비스부가 담당하고 있다.

가족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부는 모든 호주인에게 공정한 사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호주 정부의 부서로서, 특히 사회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맡고 있다.

사회서비스부의 세부 지원은 다음과 같다.

〈표 3-1〉 사회서비스부의 세부 지원 내용

영역	내용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수당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장애인 및 간병인	장애인 및 간병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지역 사회의 참여와 경제적 독립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함.
가족과 아동	가족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금과 수당을 지원함. 크게 자녀 양육을 위한 세금 혜택, 새 부모 급여, 청년 수당 등이 있음.
주거 지원	호주 정부는 사회서비스부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 및 노숙자 서비스를 지원함.
정신 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금과 세금 혜택,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원금을 통해 호주인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지원함.
노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금과 세금 혜택,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 및 자금 지원을 통해 노인을 지원함.
여성의 안전	주 및 준주 정부,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호주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지위와 복지를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음.
근로 연령층	근로 연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급 및 추가 지원금이 제공됨. 근로 연령 수당은 일을 통해 일시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거나 장애 또는 돌보는 책임으로 인해 일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지원하며, 자격이 되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함.
복지 개혁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지원하며,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특정 비용을 지원함

- 자료: 1)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October 4). Our Responsibilities,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 (2022. 8. 4. 인출)
- 2)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 September 20). Communities and Vulnerable People, <https://www.dss.gov.au/communities-and-vulnerable-people> (2022. 8. 4. 인출)
- 3)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n.d.). Disability and Carers, <https://www.dss.gov.au/disability-and-carers> (2022. 8. 4. 인출)
- 4)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August 19). Families and Children,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 (2022. 8. 4. 인출)
- 5)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September 16). Housing Support, <https://www.dss.gov.au/housing-support> (2022. 9. 24. 인출)
- 6)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January 14). Mental Health, <https://www.dss.gov.au/mental-health> (2022. 8. 4. 인출)
- 7)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August 6). Seniors, <https://www.dss.gov.au/seniors> (2022. 8. 4. 인출)
- 8)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August 9). Women's Safety,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womens-safety> (2022. 8. 4. 인출)
- 9)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March 20). Working Age Payments, <https://www.dss.gov.au/about-the-department/benefits-payments/working-age-payments> (2022. 8. 4. 인출)
- 10)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6, October 26). Welfare Reform, <https://www.dss.gov.au/review-of-australias-welfare-system/welfare-reform> (2022. 8. 4. 인출)

나. 전달체계⁴⁰⁾

호주의 가족과 아동 지원의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부는 센터링크와 아동지원기관(Child Support Agency),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호주 가정법원(Family Court of Australia)과 함께 운영된다. 이전에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하위기관이었던 센터링크와 아동지원기관은 복지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기관 아래에서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수당관련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나 양육자를 지원한다. 아동지원기관은 별거나 이혼한 부모의 아동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관련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한다. 호주 국세청은 자녀 양육비의 효과적인 평가, 징수 및 집행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개인별로 식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과 교환하며, 호주 가정법원은 재정적 분쟁을 포함한 복잡한 법적 가족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3.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

가. 일반적 역할⁴¹⁾

호주 정부는 세 수준의 정부 구조(영연방정부, 주 및 준주 정부, 지방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영연방정부는 국가 업무 수행에 책임이 있으며, 호주 전역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국방 및 외교, 무역, 이민 등에 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부 역시 연방정부에 속하는 정부 기관이며, 각 주 및 준주 정부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각 주 및 준주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0)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January 27). Related Agencies & Sites,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related-agencies-sites> (2022. 8. 4. 인출)

41)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ttps://www.parliament.nsw.gov.au/about/Pages/The-Roles-and-Responsibilities-of-Federal-State-a.aspx> (2022. 8. 4. 인출)

주 및 준주 정부는 호주 헌법에 연방정부의 책임이 아닌 모든 영역의 일을 수행한다. 주된 주 및 준주 정부의 책임에는 학교, 병원, 보전 및 환경, 도로, 철도 및 대중교통, 공공사업, 농업 및 어업, 노사 관계, 지역사회 서비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소비자 문제, 경찰, 교도소 및 응급 서비스가 포함되며, 각 주는 정부 시스템을 규정하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다.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는 각 주, 준주 내의 도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지방 정부의 영역과 역할도 다양하다. 대체로 건물 규정 및 개발, 공공 보건, 지역 도로 및 보도, 공원 및 운동장, 도서관, 지역 환경 문제, 폐기물 처리 및 많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이 대중과 가까운 문제에 관한 수행을 한다.

나. 보육 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⁴²⁾

호주 정부는 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금 조달 원천의 역할을 하며, 주 및 준주 정부는 보육 제공자를 규제하고 국가 품질 체제(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⁴³⁾에 따라 각 주의 특징에 맞는 품질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정부는 아동 보육에 관한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적격 가족에 대한 보육지원금 보조, 양질의 보육 제공을 위한 특정 보육 제공자에 대한 운영 및 자본 자금 지원, 국가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주 및 준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⁴⁴⁾에서 아동 보육과 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고서를 발표하면, 연방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재정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행한다.

주 및 준주 정부의 아동 보육에 관한 책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역할로는 아동 보육 기관 등록을 위한 입법적 틀을 제공하고 국가 품질 체제(NQF) 및 관할지역에 특정한 기타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품질을

42) Sheppard, Monika. (2015, June 23). Child care in Australia: a quick guide. *Research paper series*, 2014-15).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library/prspub/3910092/upload_binary/3910092.pdf;fileType=application/pdf (2022. 8. 4. 인출)

43) 국가 품질 체제(NQF)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음.

44) 호주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및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에 독립적인 연구 및 조언을 제공하는 정부기관

평가하며, 비정부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 및 자본 자금 제공,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정보, 지원, 교육 및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 교과 과정과 정책 지원 및 조언 등을 제공한다.

각 주 및 준주의 교육부 산하 영유아 교육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아동 보육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자 및 아동보육서비스 내용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제공자와 지원 서비스의 품질 평가와 함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등급을 부여한다. 규제 위원회(Regulatory Authority)가 각 서비스 제공업체나 센터에 방문하여 관찰과 논의를 통해 품질평가 및 등급 부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평가 시행 이전에 방문을 위한 정보가 제공된다. 평가는 매년 또는 품질 관리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시행된다.

국가 품질 체제(NQF)는 호주 연방정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해 국가 수준의 질 관리를 위해 마련한 체제로, 2009년 7월, 호주 정부 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2020년까지 모든 아동이 자신과 국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생에서 최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인 국가 품질 체제(NQF)를 수립하였다.

국가 품질 체제(NQF)는 양질의 유아 프로그램 개발을 안내하는 승인된 학습 체제로, 소속감, 존재감 및 자아형성 등을 포함하는 7개 영역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러한 7개 품질 영역을 5점 평가 척도와 결합하여 호주 전역의 개별 서비스에서 보육의 질을 설명하는 국가 품질평가 시스템이다.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은 연방정부, 주 및 준 주 정부와 거버넌스 협정을 맺고 국가 시스템의 구현 및 관리를 안내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는 교육 및 양육 서비스 국내법, 교육 및 양육 서비스 국가 규정, 국가 품질 체제(NQF)의 규제 및 집행을 위한 국가 시스템으로 각 관할권에서 입법화되고 주 및 준주의 규제 당국에서 관리한다.

4. 주요 사업 및 예산

2022년 3월 호주 연방정부는 2022~2023년 연방정부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환경 관련 영역, 자연재해 지원,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 물가, 농촌 및 벽지 지역, 여성의 안전 및 의료와 고용에 관한 영역에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동 보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난 연방 예산 편성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주요 변화로는 적절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및 벽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9만 4천AUD를 편성한 점을 들 수 있다. 아동 보육에 지원되는 예산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아동보육 지원 예산

지원 영역	지원금과 내용
2021~2022 예산안 (2025~2026년까지 고정됨) ¹⁾	- 호주 정부는 2021~2022년 예산 안에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위한 예산을 20억AUD를 책정함. 그 중 2022~2023년도부터 3년간 17억AUD(2025~2026년까지 계속되는 연간 6억7천120만AUD)를 제공하여 6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일 것을 발표함. - 2022년 7월 11일부터 두 번째 자녀와 5세 이하 보육(가정 내 보육 제외)에 대한 보육지원금(CCS) 요율을 최대 95%까지 인상함. -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189,390AUD~353,680AUD(2020~2021 기간 기준)의 가족에 대해 연간 아동 1인당 10,560AUD의 보육지원금(CCS) 연간 한도 폐지함. - 20억AUD의 예산으로 4년에 걸쳐 취학 전 영유아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는데 사용될 예정임
2021~2022 예산안 중 '유치원 개혁 기금 협정 (Preschool Reform Funding Agreement)'	- 호주 정부와 모든 주 및 준주 정부는 유치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첫해에 아동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 4년간의 국가 개혁 협정인 유치원 개혁 협정에 동의함(2022년부터 2025년까지). - 유치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기금은 2021~2022년 4억5천3백만AUD에서 2024~2025년 5억2천만AUD까지 확대 예정이며 이 개혁이 4년 이내에 달성되면 2026년부터 동일한 기금이 지원될 예정임.²⁾ - 연방정부 기금: 협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주 및 준주에 아동 1인당 2022년 기준 약 1,340AUD의 기금을 제공함. - 이 기금은 학교를 시작하기 전 해의 모든 아동이 주당 15시간(연간 600시간)의 유치원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³⁾
2022~2023 예산 추가 지원 ⁴⁾	- 적절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가난한 농촌 및 벽지 지역에서 최대 20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9천4백만AUD를 제공함(2022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2022년 후반에 Grant Connect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자료: 1)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September 19). Budget 2021-22, <https://www.education.gov.au/about-us/corporate-reporting/budget/budget-202122> (2022. 11. 30. 인출)
- 2)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September 23). Preschool Reform Funding Agreement,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preschool/preschool-reform-funding-agreement> (2022. 11. 30. 인출)
- 3) Ministers of the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Portfolio. (2021, May 13). \$2 billion funding agreement to guarantee preschool for Aussie kids, <https://ministers.dese.gov.au/tudge/2-billion-funding-agreement-guarantee-preschool-aussie-kids> (2022. 11. 30. 인출)
- 4)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March 30). 2022-23 Budget: Grants for new regional and remote services,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2022-23-budget> (2022. 11. 30. 인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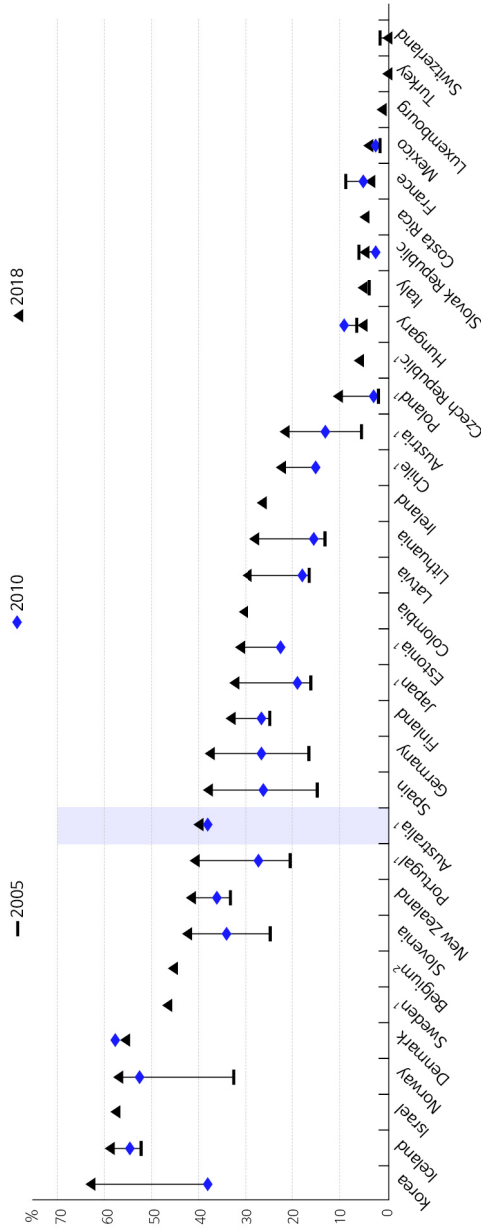
1. 유아교육·보육체계 개요

영 유아 교육·보육(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ECEC) 분야에서 OECD에 속한 국가들의 주요 과제는 다양한 인구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며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보육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족(영유아 가정, 특수 교육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이민자, 난민 및 언어 장벽이 있는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은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 걸쳐있을 수밖에 없다. 즉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 외에도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정(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여러 정책적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부문은 부모의 노동 시장 참여에 관한 정책과 어린 자녀의 돌봄을 위해 가족 이외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OECD국가 전체에서 3세 미만 아동의 영유아 교육·보육 등록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은 해당 연령의 아동 돌봄에서 요구되는 일상적인 돌봄 활동(예: 식사, 기저귀 교체)뿐만 아니라 아동의 웰빙(Well-being), 긍정적인 발달 및 조기 학습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영유아들이 감각 운동, 언어 및 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쳐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할 수 있도록 풍부한 환경, 적절한 공간과 자원이 마련될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1] ISCED 레벨 0 기준을 충족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3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 변화
(2005~18년 유아교육 및 보육(ISCED 레벨 0)에 등록된 3세 미만 아동의 비율)



주: 1) 등록 비율에는 ISCED 레벨 0 및 ISCED 레벨 0 범위를 벗어난 ECEC 서비스 모두 포함되었는데, 이는 모든 국가가 ISCED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벨기에의 경우 플랑드르 커뮤니티 하나의 경우인 ISCED 레벨 1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했기 때문에 ISCED 레벨 0 등록률은 과소평가되어있다.

자료: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gure 1-5. Change in enrolment rates of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meeting ISCED Level 0 criteria).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47a06ae-en/1/3/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f47a06ae-en&_csp_=d082f616450cabb36e84807345747f7&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2022. 8. 1. 인출)

가. 아동돌봄패키지(Child Care package) 도입 이전

호주 정부는 2018년 7월, “Family Assistance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7”을 통해 ‘아동돌봄패키지(Child Care Package, CCP)’를 도입했다.

아동돌봄패키지(CCP) 이전에는 아동돌봄베네프(Child Care Benefit, CCB)과 아동돌봄리베이트(Child Care Rebate, CCR)의 두 가지 주요 형태의 아동돌봄 지원이 있었다. 아동돌봄베네프(CCB)은 부모가 주당 최소 15시간의 활동기준(activity test)을 만족하는 경우 아동별로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승인된 보육사용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활동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동별로 주당 최대 24시간에 대한 아동돌봄베네프를 받았다.

부모가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정부 지원은 아동돌봄리베이트(CCR)인데, 가족의 본인 부담 보육비(CCB가 공제된 후)의 최대 50%를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7,613AUD까지 지급되었다. 해당 지원을 받는 조건은 부모가 해당 주에 일, 훈련 또는 학업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최소 시간 규정 기준은 없었다.

부모가 받을 수 있었던 비용 지원 방식은 각 가정에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부모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매년 지급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아동돌봄베네프의 경우, 추정소득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매년 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다. 아동돌봄베네프와 아동돌봄리베이트 지원은 직업, 교육 및 훈련 보육비 지원, 특별 및 조부모 보육 혜택, 지역 사회 지원 프로그램, 가정 보육 및 유모 시범 프로그램, 통합 및 전문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기타 지원으로 보완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는 예산 기반 기금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시골, 외딴 지역,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공동체에 직접 지원되었다.

나. 아동돌봄패키지(Child Care package) 개요

2018년 7월 도입된 ‘아동돌봄패키지’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 및 비용 증가 문제 해결, 유연성 향상 및 재정 지원 대상 확대이며, 특히 근로중이거나 구직 중인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돌봄패키지는 비용 증가와 재정 지원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므로 4개의 핵심 요소는 보육지원금(CCS), 추가 보육지원금(ACCS), 통합 지원 프로그램(Inclusion Support Program, ISP), 지역사회 보육기금(Community Child Care Fund, CCCF)이며 각 요소의 지원 형태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4-1〉 호주의 통합보육(Child Care Package)의 핵심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보육지원금 (Child Care Subsidy, CCS)	- 보육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부모에 대한 호주 정부 재정 지원의 주요 형태
추가 보육지원금 (Additional Child Care Subsidy, ACCS)	- 저렴한 보육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비용 지원
지원프로그램 (Inclusion Support Program, ISP)	- 주류 서비스에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보육기금 (Community Child Care Fund, CCCF)	-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 참여 장벽을 해결하고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높은 지역의 서비스 자금을 지원

자료: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p.1-6을 재구성함.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아동돌봄패키지의 핵심 구성요소 중 취약한 지역사회와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보육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 CCSN)이 갖추어져 있다. 보육안전망(CCSN)은 추가 보육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보육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 및 고용 참여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구조로 연계되어 있다.

[그림 4-2] 호주의 통합보육(Child Care Package)에서 추가 보육지원금과 보육안전망 구조



자료: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 2. Figure 1: Structure of the Child Care Package를 번역함.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1) 보육지원금(Child Care Subsidy)

보육지원금은 호주의 아동돌봄패키지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보육비용 지원 기준 선정에 대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아동별로 가구 혹은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규제는 (1) 시간당 지원금 요율 상한선, (2) 가계 소득 증가에 반비례하는 지원금 지원 비율, (3) 고소득 가구 지원 상한선, (4) 부모의 활동기준(activity test)에 따른 개별 아동 지원금 보육 시간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부모는 거주 요건⁴⁵⁾을 충족해야하며 지원금 지원 대상 자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13세 이하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 조건을

45) 호주에서 보육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부모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때 거주 요건은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며 호주 시민권, 영구 비자, 특별 비자, 특정 임시 비자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거나 호주 정부가 후원하는 유학생의 신분이어야 함(Service Australia, (2022, March 3). Residence rules: To get Child Care Subsidy you or your partner must meet the residence rul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sidence-rules-for-child-care-subsidy?context=41186>, 2022. 9. 28. 인출).

만족해야 한다.

시간당 지원금 요율 상한은 보육 제공자가 청구하는 요율에 대해 상한을 두는 것으로 보육 제공자가 상한기준보다 낮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대상 가구는 청구된 요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반대로 청구된 요금이 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요율에 요율 상한선⁴⁶⁾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⁴⁷⁾

가구소득에 기초한 보육료 지원금 지원 비율은 0~85% 사이이다. 2019~2020년 기준으로, 연간 가구소득이 68,163AUD 이하인 가구는 요율 85%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연간 가구소득이 352,453.6AUD 이상인 가구는 정부 지원 지원금 지원 요율이 0%로 지원금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4-3). 고소득 가구 지원 상한선은 연간 한도는 1년에 한 가구에게 지급될 최대 지원금 수준으로 가구 합계 소득⁴⁸⁾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 상한선은 2019~2020년 기준으로 연간 자녀 1인당 10,373AUD로 제한되며 기준소득 보다 낮은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의 상한을 갖지 않는다.⁴⁹⁾

부모의 활동기준(activity test)에 따른 개별 아동 지원금이 지급 가능 보육 시간은 아동 1인당 2주 기준으로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⁵⁰⁾ 이때 시간은 부모가 참여하는 ‘인정된 활동’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정된 활동’은 특히 고용에 대한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자영업, 혈연관계의 무급(무보수) 노동, 구직활동, 자원봉사 참여, 그리고

46) 시간당 지원금 요율 상한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12.74AUD, 센터기반 보육 혹은 방과 후 보육 시설의 취학 연령 아동의 경우 시간당 11.15AUD임. 가정 보육(Family day care)은 시간당 11.80AUD이며, 가정 내 보육(In Home Care)은 가족 당 34.64AUD임. 시간당 지원금 요율 상한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기반으로 정해짐.

47)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1). The type of child care you use affects i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type-child-care-you-use-can-affect-child-care-subsidy?context=41186> (2022. 8. 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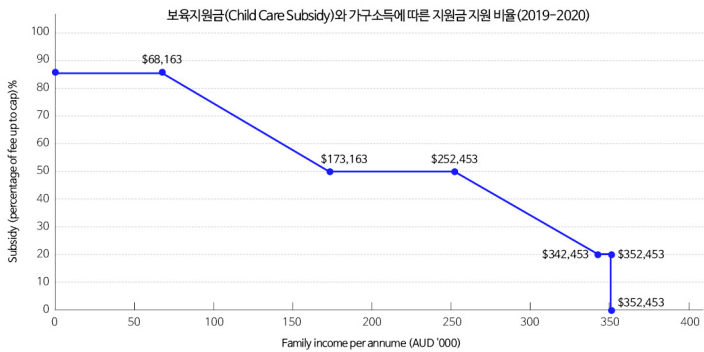
48) 고소득 가구 지원 상한선은 2019~2020년 기준, 가구 합계 소득이 188,163AUD~352,453AUD에 해당할 경우 적용됨.

49)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 5,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50)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 5,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학업을 포함한다.⁵¹⁾ 이때 가족이 처한 상황⁵²⁾에 따라 활동기준(activity test)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림 4-3] 보육지원금(Child Care Subsidy)과 가구소득에 따른 지원금 지원 비율 (2019-2020)



자료: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 4, Figure 2: Child Care Subsidy, rate of subsidy by family income, 2019-20,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2) 보육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⁵³⁾

아동돌봄패키지의 보육안전망(CCSN)의 3가지 요소는 추가 보육지원금(ACCS), 통합 지원 프로그램(ISP), 지역사회 보육 기금(CCCF)이다. 호주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목표는 생애주기 초기 취약 가정 아동과 소외지역 아동에게 양질의 조기 교육과 돌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51)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 5.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52) 호주의 보육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상 아동의 부모 혹은 보호자는 활동기준(activity test)에 참여해야 하나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 활동기준 면제는 최대 6주 동안 일시적으로 호주 밖에 있는 경우, 일할 수 없는 장애인 질병이 있는 경우, 간병인 수당 수급을 받는 경우, 장애인 질병이 있는 아동이나 성인을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경우, 감옥에 있거나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됨(Service Australia. (2022, March 3). Exemption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exemptions-for-child-care-subsidy?context=41186>, 2022. 9. 28. 인출).

53)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p. 5-6.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추가 보육지원금은 보육지원금과 더불어 지원되는 추가적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적절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구에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추가 보육지원금은 보육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지급된다.

통합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통합 및 전문 지원 프로그램(Inclusion and Professional Support Program, IPSP)의 대안으로 장애나 발달 지연 등으로 필요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육안전망의 세 번째 요소인 지역사회 보육기금은 보육서비스에 기금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이 기금은 특히 미충족 보육수요가 높은 농촌, 지방 또는 취약한 지역사회에 신규 혹은 기존의 보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하는 것이다.

다. 보육서비스 유형⁵⁴⁾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은 건강한 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모 혹은 아동의 보호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 보육서비스 수요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돕는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호주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재정도 지원하고 있다.

‘아동돌봄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호주의 아동 보육은 유아교육·보육이라고도 하며, 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등학생을 위한 보육도 포함한다. ‘아동돌봄패키지’를 통한 정규 아동보육은 제공 기관 및 대상자에 따라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가정 내 보육(In-Home care), 유아학교(Preschool), 방과 후 보육

54)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About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ustralia,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about-child-care-and-early-childhood-education-in-australia-nav-title> (2022. 7. 25. 인출)

(Outside School Hours Care)로 구성된다. 보육 수요자들은 가족 특성과 가치 중요도에 따라 이들 보육서비스 이용여부를 선택한다.

호주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 유형은 정규과 비정규 두 종류가 있다. 호주의 정규보육은 별도의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센터기반 보육으로 종일 보육(일시 보육 포함),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유아학교, 방과 후 보육이 여기에 속한다. 방과 후/전 보육은 취학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센터 기반의 정규 보육서비스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외의 보육서비스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비정규 보육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집이나 혹은 희망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는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기타 친척(다른 곳에 거주하는 부모 포함) 및 친구, 이웃, 유모 또는 베이비시터 및 기타 기관(예: 체육관 및 보건소의 어린이집)도 가능하다. 이러한 비정규 보육은 주 교육 시스템 내, 사설 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 절에서 비정규 보육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호주의 정규 보육서비스를 서비스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⁵⁵⁾

센터기반 보육에는 종일 보육(Long day care), 일시 보육(Occasional care), 유아학교(Preschool), 유치원(Kindergarten)이 포함되며 종일 보육의 경우 평일에 규칙적으로 일하는 가정에 적합한 보육유형에 해당한다. 일부 보육 기관에서는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자녀를 위해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시 보육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 혹은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집안일 등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55)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Centre-based day care: long day care and occasional care,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centre-based-day-care-long-day-care-and-occasional-care-nav-title> (2022. 7. 25. 인출)

날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정기보육 아동이 하원한 이후에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시 보육은 한국의 시간제 보육과 유사한 개념이다.

센터기반 보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격을 갖춘 교사가 기관에 상주하여 체계적인 학습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센터기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센터에 재원중인 아동들과 함께 어울려 놀이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데 또 다른 장점이 있다.

2) 가정 보육(Family day care)⁵⁶⁾

호주의 가정 보육은 인가를 받은 교육자가 보육제공자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형태로 보육대상 아동은 생후 6주에서 12세에 이른다. 가정 보육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 아동이 다른 아동과 함께 놀이와 학습을 통해 발달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관보육보다는 조용한 보육환경과 종일 돌봄보다 탄력적인 돌봄 시간으로 이러한 환경과 돌봄 특성을 선호하는 아동에게 더 적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가정 보육은 개인 보육 제공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육 제공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예: 상병)에 이용자가 돌봄 대안을 찾아야 하므로 보육서비스 이용 안정성이 센터기반 보육에 비해 낮을 수 있다.

3) 가정 내 보육(In-Home care)⁵⁷⁾

가정 내 보육은 개정된 아동돌봄패키지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가정 돌봄 프로그램(Home Care Program)과 유모 시범 프로그램(Nanny Pilot Programme)의 대체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두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가정에서는 가정 내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가정 내

56)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Family day care,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family-day-care-nav-title> (2022. 7. 25. 인출)

57)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p.7-8,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보육을 이용하려는 가정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현재의 주류 보육서비스(예: 기관 보육)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한다. 예외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1) 가정 내 보육을 하려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근무 시간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거나 가변성이 커서 정규 보육서비스 제공시간 참여가 어려운 경우, (2) 거주지역과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짐(예: 시골, 외딴 지역), (3) 가족이 처한 특수한 상황(예: 아동이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놓여 있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유아학교(Preschool)⁵⁸⁾

호주의 유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을 통한 정규 교육을 시작하기 2년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제공하는 구조화된 놀이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아학교의 형태는 종일보육기관에 속해있거나,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 유아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의 범위는 지역(주 또는 준주)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다양하며, 유아학교 입학 연령은 관할 구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4세(한국나이로 만 4세에 해당)에 해당한다.

호주에서는 유아학교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아학교를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지역(주, 준주)에서는 모든 3세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의 지역별 유치원 프로그램 및 입소 연령은 다음과 같다.

58)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2, February 25). Australia's children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www.aihw.gov.au/reports/children-youth/australias-children/contents/educatio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2. 8. 3. 인출)

〈표 4-2〉 호주의 유아학교 또는 유치원 프로그램(2017~2018)

주/준주 (State/Territory)	프로그램 이름	입학 연령 - 정규 교육 이전 연도의 유치원 프로그램	입학 연령 - 학교
NSW	Preschool	일반적으로 4~5세	5세 (7월 31일까지)
VIC	Kindergarten	4세 (4월 30일까지)	5세 (4월 30일까지)
QL	Kindergarten	4세 (6월 30일까지)	5세 (6월 30일까지)
WA	Kindergarten	4세 (6월 30일까지)	5세 (6월 30일까지)
SA	Preschool	4세 (5월 1일까지)	5세 (5월 1일까지)
TAS	Kindergarten	4세 (1월 1일까지)	5세 (1월 1일까지)
ACT	Preschool	4세 (4월 30일까지)	5세 (4월 30일까지)
NT	Preschool	4세 (6월 30일까지)	5세 (6월 30일까지)

주: NSW : New South Wales, VIC: Victoria, QL: Queens-land, SA: South Australia, WA: Western Australia, TAS: Tasmania, NT: Nothern Territory,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자료: Productivity Commission. (2022, February 3).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2019, Table 3.1 (Preschool programs in Australia, 2017-18a), <https://www.pc.gov.au/ongoing/report-on-government-services/2019/child-care-education-and-training/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rogs-2019-partb-chapter3.pdf> (2022. 8. 3. 인출)

5) 방과 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⁵⁹⁾

방과 후 보육은 방과 전 과 후, 방학 및 학교가 쉬는 임시 휴교일 등에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취학 아동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3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 또한 아침 및 방과 후 돌봄 이용이 가능하다.⁶⁰⁾⁶¹⁾ 방과 후 보육은 놀이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학교 밖 보육(Out of School Hours Services, OSH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과 후 보육은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사립학교 내에 위치하거나, 일부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같은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지역사회 의 필요와 학교 시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 방과 전(오전 6시 30분~9시 30분), (2) 방과 후 돌봄(오후 2시 30분~6시

59)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Outside school hours care,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outside-school-hours-care-nav-title> (2022. 7. 25. 인출)

60)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 No. 69 of 2010 (2010). <https://content.lislation.vic.gov.au/sites/default/files/2022-04/10-69aa015%20authorised.pdf> (2022. 7. 25. 인출)

61) 양미선·최정원·박인영(2019). 공공립유치원 돌봄 운영 모델 개발,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p. 38.

30분), (3) 방학 중 돌봄(오전 6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하여, 자기 관리,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 인식 함양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육활동은 주로 게임, 스포츠, 독서, 음악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기준에 따라 아동 30명당 1명의 교사 자격소지자가 있어야 한다. 방과 후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주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 대 교사 비율은 0~24개월 1:4, 25~35개월 1:4(빅토리아주) 또는 1:5(나머지 주), 36개월~취학 전 1:11(일부 주), 1:10(나머지 주)을 적용한다⁶²⁾.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의 경우 교사 대 취학 아동비율은 1:15에 이른다.

라. 소결

호주의 정규 아동보육은 제공 기관 및 대상자에 따라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가정 내 보육(In-Home care), 유아학교(Preschool), 방과 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로 구성된다. 보육 수요자들은 가족 특성과 가치 중요도에 따라 이들 보육서비스 이용여부를 선택한다. 호주 정부는 2018년에 도입된 ‘아동 돌봄패키지’를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연성 향상 및 재정 지원 대상 확대를 시도하였으며, ‘아동돌봄패키지’의 구성요소는 보육지원금(CCS), 추가 보육지원금(ACCS), 통합 지원 프로그램 (ISP), 지역사회 보육기금(CCCF)로 구성되어 있다.

62) 양미선·최정원·박인영(2019). 국공립유치원 돌봄 운영 모델 개발,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p. 39.

2.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호주의 유아교육은 취학 전 아동(대략 정규 교육시작 2년 전 시점)을 대상으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유아학교(Pre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다. 이때, 호주의 유아학교(Preschool) 혹은 유치원(Kindergarten)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거나 주별로 명칭을 유아학교(Preschool) 혹은 유치원(Kindergarten)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아학교 혹은 유치원 교육은 정규보육을 통해 종일보육이 이루어지는 센터기반 보육시설이나 독립된 유치원시설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취학 전 아동에게 제공되는 유아학교 혹은 유치원 교육의 유형과 범위는 호주 지역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보육서비스 위주로 시설 규모 및 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가. 보육시설 규모

호주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수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센터기반 보육 8,554개소, 가정 보육 427개소, 방과후 보육 4,662개소, 가정 내 보육 42개소로 전체 13,685개소에 달하며 6개 주와 2개 자치령에 대한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3〉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수: 2021년 6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NSW	VIC	QL	SA	WA	TAS	NT	ACT	전체
센터기반 보육	3,354	1,825	1,734	461	741	133	122	184	8,554
가정 보육	137	122	102	12	35	9	<5	7	427
방과 후 보육	1,471	1,266	784	381	480	120	60	100	4,662
가정 내 보육	-	-	-	-	-	-	-	-	42
계	4,962	3,213	2,620	854	1,256	262	185	291	13,685

주: 1) 센터기반 보육: Centre-based Day Care, 가정 보육: Family Day Care, 가정 내 보육: In- Home Care

2) NSW: New South Wales, VIC: Victoria, QL: Queens-land, SA: South Australia, WA: Western Australia, TAS: Tasmania, NT: Northern Territory,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March 28). June quarter 2021, Table 3.2: Number of services by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 <https://www.dese.gov.au/early-childhood/re-sources/june-quarter-2021> (2022. 7. 1. 인출)

나. 보육서비스 이용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구 수, 아동 수에 대한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센터기반 보육을 이용하는 가구는 649,340가구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가정 보육의 경우 64,820가구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355,880가구로 보고되었고, 가정 내 보육 이용은 1,320가구로 다른 보육서비스 유형에 비해 이용 규모가 작았다.

보육서비스 유형별 아동수의 규모는 가구당 1명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게 되므로 가구 수에 비해 규모는 더 크나, 보육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비중이 비슷하다. 호주 원주민의 보육서비스 이용가구와 아동 수에 대한 규모도 제시되어 있는데, 각기 36,590가구, 아동 51,750명이 정부 지원 보육기관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4〉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가구 수: 2021년 6월 기준

구분	구분	NSW	VIC	QL	SA	WA	TAS	NT	ACT	전체
가구 수	센터기반 보육	214,520	163,340	144,020	39,150	58,240	10,990	5,630	14,830	649,340
	가정 보육	22,860	17,000	13,150	2,230	6,700	2,030	200	680	64,820
	반과 후 보육	111,990	74,740	84,660	32,210	31,630	6,380	3,560	10,960	355,880
	가정 내 보육	-	-	-	-	-	-	-	-	1,320
	계	310,840	228,620	214,970	64,340	84,610	16,650	8,210	23,010	949,920
이동 수	센터기반 보육	256,520	195,170	178,010	46,420	70,580	13,360	6,650	17,650	782,760
	가정 보육	30,020	25,700	18,830	2,970	9,430	2,750	240	890	90,800
	반과 후 보육	151,640	99,830	116,740	45,370	43,980	8,970	4,890	15,050	486,120
	가정 내 보육	-	-	-	-	-	-	-	-	2,500
	계	429,810	314,480	307,170	92,740	117,220	23,530	11,550	32,670	1,328,540
원주민 가구 수	센터기반 보육	10,620	2,650	9,360	1,170	2,280	910	960	350	28,240
	가정 보육	1,130	160	660	40	160	220	20	20	2,410
	반과 후 보육	3,180	840	3,240	730	740	410	440	230	9,800
	가정 내 보육	-	-	-	-	-	-	-	-	40
	계	13,570	3,330	12,080	1,700	2,900	1,320	1,270	520	36,590
원주민 이동 수	센터기반 보육	13,180	3,330	12,110	1,430	2,950	1,140	1,130	430	35,610
	가정 보육	1,450	220	930	60	220	290	30	20	3,220
	반과 후 보육	4,550	1,170	4,640	1,080	1,110	590	630	300	14,050
	가정 내 보육	-	-	-	-	-	-	-	-	80
	계	18,770	4,640	17,390	2,510	4,120	1,870	1,770	740	51,750

주: 1) 센터기반 보육: Centre-based Day Care, 가정 보육: Family Day Care, 가정 내 보육: In-Home Care

2) NSW: New South Wales, VIC: Victoria, QL: Queensland, SA: South Australia, WA: Western Australia, TAS: Tasmania, NT: Northern Territory,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March 28). June quarter 2021, Table 2.2: Number of families by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Table 2.5:

Number of indigenous families by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Table 1.2: Number of children by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Table 1.5: Number of indigenous children by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 <https://www.desegov.au/early-childhood/resources/june-quarter-2021> (2022. 7. 1. 인출)

호주의 보육시설 규모와 보육시설 당 아동 수에 대해 2016~2021년에 걸쳐 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대로, 호주는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보육제도가 ‘아동돌봄패키지’로 전환되면서 종일제 보육과 일시보육이 센터기반 보육으로 통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종일제 보육 및 일시보육의 규모와 센터기반 보육시설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가정 보육은 2016년 860개소에서 2021년 6월 기준 427개로 그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보육 시설 당 아동 수는 센터기반 보육의 경우 2018년 98.4명에서 2021년 91.5명으로 다소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가정 보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가정 내 보육의 경우 기관 당 보육 아동 수는 2018년 49.2명에서 2021년 59.5명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방과 후 보육의 경우, 2016~2017년에 비해 2018년에 기관 당 보육 아동 수가 100.4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89.7명으로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호주 보육시설 변화 추이: 2016~2021

단위: 개소, 명, %

시설 유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종일제 보육 (Long Day Care)						
시설 수	6,804	7,051	-	-	-	-
아동 수	685,760	706,570	-	-	-	-
시설당 평균 아동 수	100.8	100.2	-	-	-	-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						
시설 수	-	-	7,826	8,106	8,400	8,554
아동 수	-	-	769,960	797,760	795,340	782,760
시설당 평균 아동 수	-	-	98.4	98.4	94.7	91.5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In-Home Care)*						
시설 수	860	881	499	462	441	427
아동 수	224,910	205,920	126,930	108,600	93,280	90,800
시설당 평균 아동 수	261.5	233.7	254.4	235.1	211.5	212.6
일시 보육 (Occasional Care)**						
시설 수	115	110	-	-	-	-

시설 유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아동 수	7,100	6,530	-	-	-	-
시설당 평균 아동 수	61.7	59.4	-	-	-	-
가정 내 보육 (In-Home Care)*						
시설수	-	-	49	43	42	42
아동수	-	-	2,410	2,380	2,280	2,500
시설당 평균 아동 수	-	-	49.2	55.3	54.3	59.5
방과 후 보육						
시설수	9,120	9,873	4,512	4,527	4,551	4,662
아동수	368,650	401,380	453,060	465,370	408,070	486,120
시설당 평균 아동 수	40.4	40.7	100.4	102.8	89.7	104.3

주: 1) 제시된 수치는 매년 12월 기준으로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2021년은 6월 기준 자료를 활용함.

2) * 2018년부터 가정 보육(Family Day Care)과 가정 내 보육(In-Home Care)이 분리되어 상계됨.

3) ** 2018년부터 일시 보육(Occasional Care)은 종일제 보육과 통합되어 운영됨.

자료: 1)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7).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December quarter 2016. p. 10, Table 13: Number of child care services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5 to December quarter 2016; p. 3, Table 2: Number of children using child care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5 to December quarter 2016,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december-quarter-2016> (2022. 7. 1. 인출)

2)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8, October 8).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Report for the December quarter 2017. p. 10, Table 13: Number of child care services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6 to December quarter 2017; p. 3, Table 2: Number of children using child care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6 to December quarter 2017,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report-december-quarter-2017> (2022. 7. 1. 인출)

3)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9, August 4). Child Care in Australia report for December quarter 2018. Table 1.3: Number of Children by service type and region, December quarter 2018,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australia-report-december-quarter-2018> (2022. 7. 1. 인출)

4)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0, July 10). Child Care data for December quarter 2019. Table 1.3: Number of children by region, December quarter 2019,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data-december-quarter-2019> (2022. 7. 1. 인출)

5)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1, May 2). December quarter 2020. Table 1.2: Number of children by state and territory, December quarter 2020,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december-quarter-2020> (2022. 7. 1. 인출)

6)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March 28). June quarter 2021. Table 1.2: Number of children by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 <https://www.dese.gov.au/early-childhood/resources/june-quarter-2021> (2022. 7. 1. 인출)

0~12세 아동의 주당 보육 이용시간은 센터기반 보육의 경우, 2018년 기준 29.5시간, 2021년 30.9시간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방과 후 보육의 주당 이용시간은 2016년 10.9시간에서 2021년 11.7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크지 않다. 반면, 가정 보육의 경우 2016년 30.5시간에서 2021년 24.1시간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2018년 25.0시간을 기점으로 확대되었다. 이 결과는 호주의 ‘아동돌봄패키지’를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한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0~12세 아동 주당 보육 이용시간 분포 단위: 시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종일제 보육 (Long Day Care)	28.5	28.8	-	-	-	-
가정 보육 (Family Day Care, In-Home Care)	30.5	28.5	25.0	24.2	24.1	24.1
방과 후 보육 (Outside School Hours Care)	10.9	11.2	11.6	11.7	12.6	11.7
일시 보육 (Occasional Care)	12	12.2	-	-	-	-
센터기반 보육 (Centre-based Day Care)	-	-	29.5	29.8	30.5	30.9
Total	24.9	24.6	24.7	24.8	26.1	25.2

주: 1) 제시된 수치는 매년 12월 기준으로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2021년은 6월 기준 자료를 활용함.

2) 2018년부터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과 일시 보육(Occasional Care)은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으로 통합되어 운영됨.

자료: 1)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7).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December quarter 2016. p. 3, Table 2: Number of children using child care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5 to December quarter 2016,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december-quarter-2016> (2022. 7. 1. 인출)

2)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8, October 8).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Report for the December quarter 2017. p. 5, Table 5: Average weekly hours in child care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6 to December quarter 2017,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report-december-quarter-2017> (2022. 7. 1. 인출)

3)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9, August 4). Child Care in Australia report for December quarter 2018. Table 6.1: Average weekly hours (per child) by service type and state and territory, December quarter 2018,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australia-report-december-quarter-2018> (2022. 7. 1. 인출)

- 4)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0, July 10). Child Care data for December quarter 2019. Table 6.2: Average weekly hours (per child) by service type and state and territory, December quarter 2019,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data-december-quarter-2019> (2022. 7. 1. 인출)
- 5)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1, May 2). December quarter 2020. Table 6.2: Average weekly hours (per child) by service type and state and territory, December quarter 2020,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december-quarter-2020> (2022. 7. 1. 인출)
- 6)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March 28). June quarter 2021. Table 6.2: Average weekly hours (per child) by service type and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 <https://www.dese.gov.au/early-childhood/resources/june-quarter-2021> (2022. 7. 1. 인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전반적인 시간당 보육료는 2016년 8.75AUD에서 2021년 10.40AUD로 늘었다. 보육서비스 유형별로는 센터기반 보육의 경우 2018년 9.80AUD에서 2021년 10.80AUD로 1.00AUD이 늘었으며, 방과 후 보육의 경우 2016년 7.00AUD에서 2021년 7.85AUD로 늘다. 종일제 보육 혹은 센터기반 보육에 비해 낮은 보육료 단가는 동시 보육 아동 수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유추할 수 있다.

2016~2017년 시간당 보육료에서 종일제 보육이 8.95AUD에서 9.35AUD로 늘어난 반면 가정 보육은 오히려 8.95AUD에서 8.85AUD로 축소되었다. 일시 보육의 경우 2016년 기준 10.05AUD였으며 종일제 보육(8.95AUD)에 비해 시간당 보육료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7〉 보육시설 구분에 따른 시간당 보육료 : 2016~2021 단위: AUD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종일제 보육 (Long Day Care)	8.95	9.35	-	-	-	-
가정 보육 (Family Day Care and In-Home Care)	8.95	8.85	10.15	10.50	10.70	10.90
방과 후 보육 (Outside School Hours Care)	7.00	7.20	7.30	7.55	7.40	7.85
일시 보육 (Occasional Care)	10.05	10.50	-	-	-	-
센터기반 보육 (Centre-based Day Care)	-	-	9.80	10.25	10.50	10.80
Total	8.75	9.00	9.55	9.95	10.15	10.40

주: 1) 제시된 수치는 매년 12월 기준으로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2021년은 6월 기준 자료를 활용함.

2) 2018년부터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과 일시 보육(Occasional Care)은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으로 통합되어 운영됨.

자료: 1)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7).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December quarter 2016. p. 11, Table 14: Average hourly fee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5 to December quarter 2016,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december-quarter-2016> (2022. 7. 1. 인출)

2)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8, October 8).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Report for the December quarter 2017. p. 11, Table 14: Average hourly fee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6 to December quarter 2017,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report-december-quarter-2017> (2022. 7. 1. 인출)

3)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9, August 4). Child Care in Australia report for December quarter 2018. Table 4.2: Average hourly fee by service type, December quarter 2018,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australia-report-december-quarter-2018> (2022. 7. 1. 인출)

4)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0, July 10). Child Care data for December quarter 2019. Table 5.2: Average hourly fee by state and territory, December quarter 2019,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data-december-quarter-2019> (2022. 7. 1. 인출)

5)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1, May 2). December quarter 2020. Table 5.2: Average hourly fee by state and territory, December quarter 2020,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december-quarter-2020> (2022. 7. 1. 인출)

6)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March 28). June quarter 2021. Table 5.2: Average hourly fee by state and territory, June quarter 2021, <https://www.dese.gov.au/early-childhood/resources/june-quarter-2021> (2022. 7. 1. 인출)

다. 보육서비스 교사 자격⁶³⁾

호주는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을 통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최소 자격 및 교육자 대 아동 비율 요건을 국가 품질 체제(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에 명시하고 있다.

호주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구분에 따른 최소 자격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63)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c). Educator to child ratios, <https://www.acecqa.gov.au/nqf/educator-to-child-ratios> (2022. 8. 11. 인출)

1)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⁶⁴⁾

미취학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기반 보육의 경우 최소 교육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센터기반 보육은 일부 주 및 주 경계에 위치한 유아원 및 유치원뿐만 아니라 장기 보육 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교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보육 및 교육기관의 교사는 교육 및 보육서비스 국가 규정(Regulation 126 of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에 따라 최소 50%는 디플로마⁶⁵⁾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모든 교육자는 수료증 III (Certificate III)⁶⁶⁾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아동의 수에 따라 영유아 교사(Early Childhood Teacher, ECT)를 참여시키거나 유아 교사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국가 품질 체제(NQF)에서는 센터기반 보육서비스의 경우 동시보육 아동 수를 25명 미만, 25~59명, 60~80명, 8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육(혹은 출석) 아동 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유아 교사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조건하에서 유아 교사의 요건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4-8〉 센터기반 보육서비스에 대한 유아 교사 요건 (2022년 기준)

동시 보육(출석) 아동 수	필요 유아 교사 요건
25명 미만	- 보육서비스 운영 시간의 최소 20%에 이르는 시간은 유아 교사와 접근 가능하여야 함. - 정보 통신 기술 솔루션을 통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25~59명	-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또는 종일제에 상응하는 유아 교사를 고용하거나 다음상황에서 출석하는 유아 교사가 있어야 함. • 주당 5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에 하루 6시간 • 또는 주당 50시간미만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제공 시간의 60%에 이르는 시간

64)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f). Qualifications for centre-based services with children preschool age or under,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requirements/children-preschool-age-or-under> (2022. 8. 1. 인출)

65) 디플로마 수준은 다음의 a) 수료증 III 레벨 자격 보유, b) 수료증 III 단위 완료, c) 승인된 ECT 자격에서 단위의 30%를 완료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졸업장 수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66) 수료증 III 수준의 자격은 a) ACECQA 승인 자격에 등록하고 학업을 시작한 경우, b) 과정을 완료하기 위한 진행과정에 있는 경우, c)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로 간주됨.

동시 보육(출석) 아동 수	필요 유아 교사 요건
----------------------	-------------

-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또는 종일제에 상응하는 유아 교사를 고용하거나 다음상황에서 출석하는 유아 교사가 있어야 함.
 - 주당 5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에 하루 6시간
 - 또는 주당 50시간미만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제공 시간의 60% 에 이르는 시간

60~80명 [2020년부터 추가된 사항]

- 다음의 경우, 2급 유아 교사 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야 함
 - 1일 3시간, 주당 5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 또는 주당 50시간미만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제공 시간의 30%에 이르는 시간
- 해당 요건은 종일제 유아 교사가 있거나, 2급 유아 교사가 반일제 또는 종일제와 동일하게 보육서비스에 참여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또는 종일제에 상응하는 유아 교사를 고용하거나 다음상황에서 출석하는 유아 교사가 있어야 함.
 - 주당 5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에 하루 6시간
 - 또는 주당 50시간미만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제공 시간의 60%에 이르는 시간

80명 이상 [2020년부터 추가된 사항]

- 다음의 경우, 2급 유아 교사 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야 함.
 - 1일 6시간, 주당 5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 또는 주당 50시간미만으로 서비스 제공시에는 제공 시간의 60%에 이르는 시간
- 해당 요건은 종일제 유아 교사가 있거나, 2급 유아 교사가 반일제 또는 종일제와 동일하게 보육서비스에 참여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f). Qualifications for centre-based services with children preschool age or under,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requirements/children-preschool-age-or-under> (2022. 8. 1. 인출)

2)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가정 보육의 경우 가정에서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제공하는 교육 및 돌봄으로 호주 정부는 가정 보육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 보육 교사는 최소한 승인을 받은 수료증 III⁶⁷⁾ 수준의 교육 및 보육 자격을

67) 수료증 III 수준을 충족하는 자격요건은 ACECQA 승인 자격에 등록하고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료과정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계속해 나가는 경우(원문: You can be counted towards meeting the certificate III level qualification requirements if you are: enrolled in an ACECQA approved qualification and have started study making satisfactory progress towards completing the course meeting the requirements to maintain enrolment.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a). Actively working towards a qualification,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requirements/actively-working-towards-a-qualification>, 2022. 9. 27. 인출)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노력(Actively working towards a qualification)⁶⁸⁾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적극적인 노력’은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ACECQA)에 따르면 승인 자격(수료증 III, 디플로마 또는 유아교육(Early Childhood Teaching, ECT)을 얻으려는 자세로 안내하고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에서는 가정 보육 교사는 최소한 승인을 받은 수료증 III 수준의 교육 및 보육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호주 국가 품질 체제(NQF)에 따라 가정보육 교사는 1) 승인된 수료증 III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 이전 수료증 III 수준 자격을 보유하거나, 3)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이 인정한 수료증 III과 동등 수준 교육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가정 보육 교사는 반드시 응급 처치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3) 가정 내 보육(In-Home care)⁶⁹⁾

가정 내 보육은 기관보육이나 다른 종류의 돌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보육서비스로 개별 가구의 보육 욕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보육이다. 가정 내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아동이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보육서비스는 네트워크 중개 모델(networked brokerage model)을 통해 호주 정부, 보육서비스 제공업체, 보육서비스 제공자(교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가정 내 보육은 보육서비스 제공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2019년 1월 기준, 최대 3,200개 장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아동 1인당 최대 100시간(2주 기준)의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 내 보육은 가족들에게 일종의

68) 국가 규정은 교육자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기 위해 교육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격 수준을 명시하고 있음. ACECQA는 승인된 자격을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함. ACECQA 승인 자격(수료증 III, 디플로마 또는 유아교육(ECT))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a). Actively working towards a qualification,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requirements/actively-working-towards-a-qualification> (2022. 9. 27. 인출)

69)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pp.7-8,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유연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으나, 적합한 자격을 갖춘 교사(서비스 제공자)의 가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4) 방과 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⁷⁰⁾

호주의 방과 후 보육은 방과 전/후 및 방학 동안 주로 취학 연령 아동에게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방과 후 보육서비스는 취학 아동을 교육하고 돌보는 센터기반 서비스로 보육 혹은 교육자에 대한 국가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다. 다만 일부 주 및 준주 경계에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적용받으며 해당되는 지역은 호주수도 준주,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준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규제 당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과 후 보육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품질 체계(NQF)에서 명시하는 해당 연령 아동에 대한 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취학 아동 대상 방과 후 보육(OSHC) 서비스에 배치되는 교사의 50%는 승인된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 학위 이수를 받았거나, 수료 과정에 있는 자여야 한다.⁷¹⁾

방과 후 보육서비스 구축 및 서비스 운영방식의 결정 권한 및 모든 재무 관리와 법적 책임은 학교협의회에 있으며 방과 후 보육서비스는 국가 품질 체제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로 국가 표준을 따르고 있다. 각 주와 준주에서 국가 품질 체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해당 지역의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이에 따라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⁷²⁾

70)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Outside school hours care,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outside-school-hours-care-nav-title> (2022. 7. 25.)

71) 양미선·최정원·박인영(2019), 공공립유치원 돌봄 운영 모델 개발,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pp. 38-39.

72) 양미선·최정원·박인영(2019), 공공립유치원 돌봄 운영 모델 개발,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pp. 38-39.

라. 보육서비스 자격관리

호주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자격은 취학 전 연령의 아동에게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의 유아 보육교육 자격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은 1) 유아 교사 자격(Early childhood teaching qualifications), 2) 디플로마 수준의 자격(Diploma level qualifications), 3) 수료증 III 수준의 자격(Certificate III level qualifications)이 있다. 만약 보육·교육 제공 대상자가 국가 승인 자격 목록에 제시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에 신청하여 품질이나 수준에 대해 동등성 평가(Equivalence assessment)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보육서비스 교사 근로 형태

호주 교육부의 2016년 센서스자료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단기 시간제 고용(주당 1~19시간 근무), 장기 시간제 고용(20~34시간 근무), 종일제 고용(주당 35~40시간 근무), 초과 근무제 고용(주당 41시간 이상 근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보육 서비스 유형별로 근로시간에 대한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종일제 고용(32.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장기 시간제 고용(28.6%)과 단기 시간제 고용(27.3%)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보육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종일제 보육의 경우 종일제 고용형태(주당 35~40시간 근무)가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장기 시간제 고용(32.1%), 단기 시간제 고용(19.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반면 가정 보육의 경우, 초과 근무제 고용(주당 41시간 이상 근무)이 5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종일제 고용(20.8%)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보육의 경우 장기 시간제 고용(29.8%)과 단기 시간제 고용(27.8%)은 종일제보다는 비중이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과 후 보육의 경우도 단기 시간제 고용(68.0%)이 장기 시간제 고용(21.7%)보다 비중이 커, 보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형태의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보육서비스 유형별 준거기간 주당 근무 시간 (호주, 2016년 센서스 자료)

단위: %, 명

구분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 보육	방과 후 보육	방학 보육	합계
단기 시간제 고용 (1~19 시간)	19.1	6.3	27.8	44.8	68.0	45.7	27.3
장기 시간제 고용 (20~34 시간)	32.1	18.7	29.8	34.0	21.7	34.0	28.6
종일제 고용 (35~40 시간)	46.5	20.8	19.4	20.5	9.0	16.8	32.9
초과 근무제 고용 (41+ 시간)	2.3	54.2	23.0	0.6	1.3	3.5	11.2
합계 (명)	108,521	32,580	1,901	936	27,491	23,563	194,994

주: 1) 가중 데이터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개별 요소의 실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서비스에서 기준 준거기간(주) 동안 근무 시간을 보고한 직원을 대상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11). 2016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Census report. p. 14, Table 3 Size of ECEC workforce in the ECEC National Workforce Census; p. 18, Figure 6 Hours worked during reference week by service type,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2016-national-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workforce-census-report> (2022. 7. 14. 인출)

영유아 교육·보육(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보유 수준은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의 비중이 전체 85.2%에 해당하며, 특히 수료증을 보유(38.0%)하였거나, 졸업증(34.1%)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았다.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인력의 11.9%를 차지하며, 보육 서비스 유형의 비중은 방학 보육(18.7%), 방과 후 보육(14.0%), 종일제 보육(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사 학위는 4년제와 3년제로 구분되며 각각 8.3%, 3.6%를 차지한다.

보육 서비스 유형별로는 영유아 교육·보육(ECEC)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이 종일제 보육(91.8%), 가정 보육(93.2%), 일시보육(95.0%)에서 높은 비중이 관찰되었다.

〈표 4-10〉 보육 서비스 유형별 조사 참여 유급 보육인력의 최종 ECEC 자격보유 수준
(2016년, 호주 센서스 자료)

단위: %, 명

구분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 보육	방과 후 보육	방학 보육	합계
최종 ECEC 자격 비율 (%)							
학사 학위 이상	12.9	3.0	8.9	9.8	14.0	18.7	11.9
학사 학위 (4년제)	8.6	1.9	5.3	7.8	10.6	15.1	8.3
학사 학위 (3년제)	4.4	1.1	3.7	2.1	3.4	3.5	3.6
디플로마 (Diploma) 이상	38.8	34.6	22.4	47.5	22.5	21.4	34.1
수료증 III 또는 IV (Certificate III / IV) 보유	39.1	54.3	31.9	35.8	23.1	21.9	38.0
수료증 III (Certificate III) 이하	1.0	1.3	3.0	1.9	1.8	1.7	1.2
ECEC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 전체	91.8	93.2	66.2	95.0	61.4	63.7	85.2
ECEC 관련 자격이 없는 직원 전체	8.2	6.8	33.8	5.0	38.6	36.3	14.8
최종 ECEC 자격 수 (명)							
학사 학위 이상	11,632	825	107	73	2,576	3,190	18,403
학사 학위 (4년제)	7,717	516	63	58	1,957	2,586	12,898
학사 학위 (3년제)	3,915	309	44	15	619	604	5,506
디플로마 (Diploma) 이상	34,843	9,530	268	355	4,145	3,655	52,796
수료증 III 또는 IV (Certificate III / IV) 보유	35,189	14,966	381	267	4,258	3,731	58,792
수료증 III (Certificate III) 이하	888	349	36	14	331	294	1,913
ECEC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 전체	82,553	25,671	792	709	11,309	10,870	131,904
ECEC 관련 자격이 없는 직원 전체	7,338	1,867	404	37	7,099	6,200	22,945
합계 (명)	95,713	30,566	1,655	751	24,022	21,303	174,010

주: 1) 가중 데이터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개별 요소의 실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해당 표에는 유급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직원의 정보로 작성되었음.

3) ECEC 관련 자격에는 유아교육, 초등 교육, 기타 교육, 보육, 간호, 기타 인간 복지 연구, 행동 과학 및 기타 조기 교육이 포함됨.

4)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11). 2016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Census report. p. 19, Table 5 Highest level of ECEC-related qualifications of paid contact staff by service,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2016-national-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workforce-census-report> (2022. 7. 14. 인출)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자의 해당분야 근무 연수를 경력으로 가름하여 살펴보았으며 해당 분야 평균 근무 연수는 7.4년이다. 전체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경력(28.7%)을 가진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비중도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1~3년 경력(31.5%), 4~6년 경력(22.4%)의 종사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11〉 보육 서비스 유형별 조사 참여 유급 보육인력의 ECEC 분야 근무 연수
(2016년, 호주 센서스 자료)

단위: 명, 년, %

구분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 보육	방과 후 보육	방학 보육	전체
ECEC 관련분야 보육 직원수 (명)							
<1 년	4,117	3,053	76	26	614	618	8,505
1~3 년	21,822	11,766	245	117	3,189	3,160	40,300
4~6 년	19,143	3,945	162	145	2,582	2,640	28,618
7~9 년	9,465	1,678	81	92	1,250	1,115	13,680
10+ 년	23,854	5,228	229	329	3,674	3,330	36,644
평균 근무 연수 (년)	7.7	5.7	7.5	11.1	8	7.6	7.4
확인되지 않음 (명)	4,152	0	0	0	0	7	4,159
합계	82,553	25,671	792	709	11,309	10,870	131,904
ECEC 관련분야 보육 직원 비율(%)							
<1 년	5.3	11.9	9.6	3.7	5.4	5.7	6.7
1~3 년	27.8	45.8	31.0	16.5	28.2	29.1	31.5
4~6 년	24.4	15.4	20.4	20.4	22.8	24.3	22.4
7~9 년	12.1	6.5	10.2	13.0	11.0	10.3	10.7
10+ 년	30.4	20.4	28.8	46.4	32.5	30.7	28.7
합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중 데이터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개별 요소의 실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ECEC 관련 자격에는 유아교육, 초등 교육, 기타 교육, 보육, 간호, 기타 인간 복지 연구, 행동 과학 및 기타 조기 교육이 포함됨.

3) ECEC 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명시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포함함.

4)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11). 2016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Census report. p. 27, Table 10 Years of experience in the ECEC sector of paid contact staff, by service type,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2016-national-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workforce-census-report> (2022. 7. 14. 인출)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분야 평균 근무 연수는 3.5년이다. 전체 대상자 중, 1~3년 경력(43.7%), 1년 미만 경력(22.3%)의 종사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 정규직의 경력은 전체 종사자 대비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정규직 대상, 보육 서비스 유형별 조사 참여 유급 보육인력의 ECEC 분야 근무 연수 (2016년, 호주 센서스 자료)

단위: 명, 년, %

구분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 보육	방과 후 보육	방학 보육
ECEC 관련분야 정규직 근무 연수(명)						
<1 년	17,525	7,196	231	118	2,566	2,422
1~3 년	34,351	12,729	360	218	4,690	4,750
4~6 년	15,751	2,232	113	144	2,012	1,956
7~9 년	7,377	1,135	51	83	833	756
10+ 년	7,503	2,319	37	146	1,206	983
평균 근무 연수 (년)	3.7	3.2	2.6	5.7	3.8	3.5
확인되지 않음 (명)	46	59	0	0	1	3
합계 (명)	82,553	25,671	792	709	11,309	10,870
ECEC 관련분야 정규직 보육 직원 비율(%)						
<1 년	21.2	28.1	29.2	16.6	22.7	22.3
1~3 년	41.6	49.7	45.4	30.7	41.5	43.7
4~6 년	19.1	8.7	14.3	20.3	17.8	18.0
7~9 년	8.9	4.4	6.4	11.7	7.4	7.0
10+ 년	9.1	9.1	4.7	20.6	10.7	9.0
확인되지 않음 (%)	0.1	0.2	0.0	0.0	0.0	0.0
합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가중 데이터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개별 요소의 실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ECEC 관련 자격에는 유아교육, 초등 교육, 기타 교육, 보육, 간호, 기타 인간 복지 연구, 행동 과학 및 기타 조기 교육이 포함됨.

3) ECEC 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명시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포함함.

4)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11). 2016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Census report. p. 28, Table 11 Tenure as a paid contact staff in current service, by service type,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2016-national-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workforce-census-report> (2022. 7. 14. 인출)

바. 소결

호주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수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센터기반 보육 8,554개소, 가정 보육 427개소, 방과 후 보육 4,662개소, 가정 내 보육 42개소로 전체 13,685개소에 달한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센터기반 보육 이용 가구 649,340가구, 가정 보육 64,820가구, 방과 후 보육 355,880가구, 가정 내 보육 1,320가구로 조사되었다.

호주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자격은 취학 전 연령의 아동에게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세 가지 유형(유아 교사 자격 (Early childhood teaching qualifications), 디플로마 수준의 자격(Diploma level qualifications), 수료증 III 수준의 자격(Certificate III level qualifications))의 유아 보육교육 자격이 있으며 교육·보육 제공 대상자가 국가 승인 자격 목록에 제시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ACECQA)에 신청하여 품질이나 수준에 대해 동등성 평가(Equivalence assessment)를 요청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16년 센서스자료에 의하면 단기 시간제 고용(주당 1~19시간 근무), 장기 시간제 고용(20~34시간 근무), 종일제 고용(주당 35~40시간 근무), 초과 근무제 고용(주당 41시간 이상 근무)으로 구분되며 보육 서비스 유형별로 근로시간에 대한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3.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질 관리

가. 국가 품질 체제(NQF)

호주의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은 2012년에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유치원/유치원 및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전반에 걸쳐 교육 및 보육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품질 체제(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를 도입했다.⁷³⁾

호주의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NQS)은 유아교육·보육, 방과 후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⁷⁴⁾ 호주의 국가 품질 기준(NQS)에는 아동에게 중요한 7가지 품질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국가 품질 기준은 규제 기관을 통해 보육서비스 평가 및 등급이 매겨지며, 7가지 품질 영역 각각에 대한 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 등급을 부여한다. 호주의 국가 품질 기준에서 제시하는 7가지 품질 영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3〉 국가 품질 체제의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NQS)

질 관리 영역	구분	내용
영역 1	교육 프로그램과 실행	교육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은 아동 중심적이며 각 아동의 학습 및 발달을 향상 및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극하고 극대화한다.
영역 2	아동의 건강과 안전	아동은 자신의 건강, 안전 및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영역 3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은 안전하고 적합하며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영역 4	교사 및 직원 배치	아동과 따뜻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들이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교육자다.

73)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d). National Quality Framework, <https://www.acecqa.gov.au/national-quality-framework> (2022. 8. 11. 인출)

74)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e). National Quality Standard, <https://www.acecqa.gov.au/nqf/national-quality-standard> (2022. 8. 11. 인출)

질 관리 영역	구분	내용
영역 5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관계는 호응하고 존중하며 아동들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증진한다.
영역 6	가정,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가정과의 협력 관계는 아동을 위한 양질의 결과를 달성하는 기본이며 지역 사회 파트너십은 적극적인 의사 소통, 상담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영역 7	거버넌스와 리더십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리더십과 거버넌스는 아동의 학습 및 발달을 위한 양질의 환경에 기여한다. 유능한 리더는 서비스에 대한 공유 가치를 설정하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한다.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e). National Quality Standard, <https://www.acecqa.gov.au/nqf/national-quality-standard> (2022. 8. 11. 인출)

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국가 품질 체제(NQF)는 아동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최소 자격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 보육 및 센터기반 교육 및 보육 환경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day care)

센터기반 보육에서 교사와 아동의 비율은 보육실 개수가 아닌 전체 보육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교사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될 수 있다. 특정 연령 범위의 아동을 돌보는 교사라 할지라도 각 연령 범위의 교사 비율이 유지되고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연령 범위의 아동에 대한 교사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는 교사의 수는 직접 아동을 돌보는 자로만 한정되어 있다.

〈표 4-14〉 정규직 대상, 보육 서비스 유형별 조사 참여 유급 보육인력의 ECEC 분야 근무 연수
(2016년, 호주 센서스 자료)

아동 연령	아동 대 교사 비율	적용 기준
생후 24 개월 미만	1 : 4	모든 연방과 자치령
24~36 개월	1 : 5	VIC 를 제외한 모든 연방과 자치령
	1 : 4	VIC
36 개월 이상~ 취학 전 연령	1 : 11	ACT, NT, QLD, SA, VIC
	1 : 10	NSW
	1 : 10	TAS
	2 : 25 (유치원 과정에 등록된 아동의 경우)	
	1 : 10	WA
	1 : 15	NT, QLD, SA, TAS, VIC, NSW
취학 전 연령 이상~	1 : 11	ACT
	유치원 아동이 없는 경우 처음 12명의 아동은 1:10이며, 이후 1:13 으로 제한 (예: 11명 또는 12명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2명의 직원이 필요함)	WA

주: NSW : New South Wales, VIC: Victoria, QL: Queens-land, SA: South Australia, WA: Western Australia, TAS: Tasmania, NT: Nothern Territory,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c). Educator to child ratios, <https://www.acecqa.gov.au/nqf/educator-to-child-ratios> (2022. 8. 11. 인출)

2) 가정 보육(Family day care)⁷⁵⁾

가정 보육에서는 교육자(보육제공자)와 아동의 비율은 1:7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학 전 연령 이하의 아동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이 된다. 이 비율에는 13세 미만의 교육자(보육제공자) 자신의 자녀에 대해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성인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도 돌봄 대상 아동 비율에 포함된다.

75)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c). Educator to child ratios, <https://www.acecqa.gov.au/nqf/educator-to-child-ratios> (2022. 8. 11. 인출)

다. 보육 프로그램 승인 관리⁷⁶⁾

호주의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은 국가 품질 체제(NQF)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유아교육 및 보육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세 가지 대상자에는 유아 교사(Early childhood teacher), 디플로마 수준의 교육자(Diploma level educator), 수료증 III(Certificate III) 레벨 교육자에 해당하며 특정 유아 교육·보육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심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 승인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된다.

라. 소결

호주의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은 교육 및 보육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품질 체제(NQF)를 도입하였으며 국가 품질 기준(NQS)은 유아교육·보육, 방과 후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 품질 체제는 아동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최소 자격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건 규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76)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b). Early childhood qualification assessment,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assessment/apply/early-childhood> (2022. 8. 11. 인출)

맺음말

호 주의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는 18.5% 수준이며 출산율도 꾸준히 줄고 있다. 여성의 교육 및 고용 증가로 인해 가정(결혼)을 늦게 시작함에 따라 출산 자녀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불안감과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져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에서는 양육 및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아버지 및 파트너 급여, 조부모 지원, 가족 혜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제도는 소득별, 자녀 연령별, 자녀 수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교육·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요구에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7월 ‘아동돌봄패키지(new Child Care Package, CCP)’를 도입하였다. ‘아동돌봄패키지(CCP)’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 및 비용 증가 문제 해결, 유연성 향상 및 재정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한다. 특히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해 부모 혹은 양육자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동시에 보육에 투입되는 재원활용에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호주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는 유아교육·보육, 방과 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기준을 설정하고 7가지 품질 영역(교육프로그램과 실행,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교사 및 직원 배치, 아동과의 관계, 가정,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리더십) 각각에 대한 등급을 기반으로 전체 등급을 정한다. 이러한 7개 품질 영역의 분류는 아동 보육 환경을 보육 공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확대하여 전 방위적인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재고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이상 아동보육 및 교육에 있어 호주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기준을 살펴보았다. 호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은 아동이 속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보다 적합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려는 세밀함이 있다. 동시에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개별 가구와 아동이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호주 정부의 정책은 실제 우리나라의 교육·보육정책의 방향성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 보육 이외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호주에서도 일시 보육(Occasional Care) 혹은 임시보육의 형태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나 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수요자의 서비스접근성과 유연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보육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고자 아동돌봄패키지(CCP)를 통해 기존의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일시 보육, 방과 후 보육을 모두 통합하여 경제성 및 비용 증가 문제 해결, 유연성 향상 및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히 근로 중이거나 구직 중인 부모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일제 보육'과 '시간제 보육'의 이용자를 뚜렷이 구분 짓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접근방식으로 양육자의 보육서비스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양미선·최정원·박인영(2019). 국공립유치원 돌봄 운영 모델 개발,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한호일보(2021. 8. 25.). 호주 출산율 역대 최저.. “정책 방안 마련 시급”, <http://www.hanh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53> (2022. 7. 25. 인출)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August 10). Snapshot of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eople-and-communities/snapshot-australia/latest-release> (2022. 7. 25. 인출)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March 17). National, state and territory population,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national-state-and-territory-population/sep-2021> (2022. 6. 24. 인출)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July 21).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 Relationship in household - FM4 - Unemployed persons by duration of job search and relationship in household, January 1991 onwards (pivot table),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detailed/latest-release#relationship-in-household> (2022. 7. 21. 인출)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n.d.). Total fertility rate, 1932 to 2020(a),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births-australia/2020> (2022. 9. 7. 인출)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a). Actively working towards a qualification,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requirements/actively-working-towards-a-qualification> (2022. 9. 27. 인출)

-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b). Early childhood qualification assessment,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assessment/apply/early-childhood> (2022. 8. 11. 인출)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c). Educator to child ratios, <https://www.acecqa.gov.au/nqf/educator-to-child-ratios> (2022. 8. 11. 인출)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d). National Quality Framework, <https://www.acecqa.gov.au/national-quality-framework> (2022. 8. 11. 인출)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e). National Quality Standard, <https://www.acecqa.gov.au/nqf/national-quality-standard> (2022. 8. 11. 인출)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n.d.f). Qualifications for centre-based services with children preschool age or under, <https://www.acecqa.gov.au/qualifications/requirements/children-preschool-age-or-under> (2022. 8. 1.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2020, April 25). JobKeeper Payment: Supporting businesses to retain jobs,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0-04/Fact_sheet_supporting_businesses_0.pdf (2022. 7. 29.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2022, July 15). Employees pay, leave and entitlements, <https://business.gov.au/people/employees/employees-pay-leave-and-entitlements#:~:text=The%20national%20minimum%20wage%20is,are%20covered%20by%20an%20award>, 2022. 7. 22. 인출)
- Bray, J. R. et al. (2021). Child Care Package Evaluation: Final Report. (Research Report).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 te of Family Studies.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2021_child_care_package_evaluation_final_report_0.pdf (2022. 9. 28. 인출)
- Britannica. (2019, June 13). Macquarie Island, <https://www.britannica.com/place/Macquarie-Island> (2022. 7. 25. 인출)
- Britannica. (2017, December 28). Lord Howe Island, <https://www.britannica.com/place/Lord-Howe-Island> (2022. 7. 25. 인출)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2, February 25). Australia's children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www.aihw.gov.au/reports/children-youth/aust-ralias-children/contents/educatio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2. 8. 3.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October 10). Higher CCS for multiple children and removal of annual cap,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higher-ccs-multiple-children-and-removal-annual-cap> (2022. 11. 29.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March 30). 2022-23 Budget: Grants for new regional and remote services,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2022-23-budget> (2022. 11. 30.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September 19). Budget 2021-22, <https://www.education.gov.au/about-us/corporate-reporting/budget/budget-202122> (2022. 11. 30.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September 23). Preschool Reform Funding Agreement,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preschool/preschool-reform-funding-agreement> (2022. 11. 30. 인출)

-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7).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December quarter 2016,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december-quarter-2016> (2022. 7. 1.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7, September 11). 2016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Census report, <https://www.dese.gov.au/child-care-package/early-childhood-data-and-reports/national-workforce-census/2016-national-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workforce-census> (2022. 7. 14.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8, October 8).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in Summary Report for the December quarter 2017,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early-childhood-and-child-care-summary-report-december-quarter-2017> (2022. 7. 1.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9, August 4). Child Care in Australia report for December quarter 2018,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australia-report-december-quarter-2018> (2022. 7. 1.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0, July 10). Child Care data for December quarter 2019,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child-care-data-december-quarter-2019> (2022. 7. 1.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1, May 2). December quarter 2020,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resources/december-quarter-2020> (2022. 7. 1. 인출)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2, March 28). June quarter 2021, <https://www.dese.gov.au/early-childhood/resources/june-quarter-2021> (2022. 7. 1.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4, June). Paid Parental Leave scheme: Review Report, https://www.dss.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06_2014/paid_parental_leave_scheme_review_report.pdf (2022. 7. 22.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6, October 26). Welfare Reform, <https://www.dss.gov.au/review-of-australias-welfare-system/welfare-reform> (2022. 8. 4.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 September 20). Communities and Vulnerable People, <https://www.dss.gov.au/communities-and-vulnerable-people> (2022. 8. 4.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January 14). Mental Health, <https://www.dss.gov.au/mental-health> (2022. 8. 4.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August 9). Women's Safety,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womens-safety> (2022. 8. 4.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August 19). Families and Children,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 (2022. 8. 4.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 October 4). Our Responsibilities,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 (2022. 8. 4.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March 20). Working Age Payments, <https://www.dss.gov.au/about-the-department/benefits-payments/working-age-payments> (2022. 8. 4. 인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August 6). Seniors, <https://www.dss.gov.au/about-the-department/benefits-payments/seniors> (2022. 8. 4. 인출)

-
- s://www.dss.gov.au/seniors (2022. 8. 4. 인출)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February 5). Children - Programs & Services,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children> (2022. 8. 2. 인출)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September 22). Description of the Child Support Scheme,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child-support/the-child-support-scheme> (2022. 11. 21. 인출)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September 16). Housing Support, <https://www.dss.gov.au/housing-support> (2022. 9. 24. 인출)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December 2).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llowance,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benefits-payments/transition-to-independent-living-allowance-tila> (2022. 12. 2. 인출)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n.d.). Disability and Carers, <https://www.dss.gov.au/disability-and-carers> (2022. 8. 4. 인출)
- Martin, B., Baird, M., Brady, M., Broadway, B., Hewitt, B., Kalb, G., ... Xiang, N. (2014). PPL evaluation: Final report. ISSR 10012 and ISSR 10333. Brisbane, QLD Australia: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 Ministers of the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Portfolio. (2021, May 13). \$2 billion funding agreement to guarantee preschool for Aussie kids, <https://ministers.dese.gov.au/tudge/2-billion-funding-agreement-guarantee-preschool-aussie-kids> (2022. 11. 30. 인출)
- Department of the Parliamentary Library. (1999, June 24). Bills Digest No. 205 1998-99 A New Tax System (Family Assi

stance) (Administration) Bill 1999,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9899/99bd205 (2022. 8. 2. 인출)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47a06ae-en/1/3/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f47a06ae-en&_csp_=dd82f616450cabbb36e84807345747f7&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2022. 8. 1. 인출)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ttps://www.parliament.nsw.gov.au/about/Pages/The-Roles-and-Responsibilities-of-Federal-State-a.aspx> (2022. 8. 4. 인출)

Productivity Commission. (2022, February 3).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2019, <https://www.pc.gov.au/ongoing/report-on-government-services/2019/child-care-education-and-training/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rogs-2019-partb-chapter3.pdf> (2022. 8. 3. 인출)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About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ustralia,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about-child-care-and-early-childhood-education-in-australia-nav-title> (2022. 7. 25. 인출)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Centre-based day care: long day care and occasional care,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centre-based-day-care-long-day-care-and-occasional-care-nav>

title (2022. 7. 25. 인출)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Family day care,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family-day-care-nav-title> (2022. 7. 25. 인출)

Raising Children Network (Australia). (2021, July 30). Outside school hours care,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work-child-care/organising-child-care/child-care-types#outside-school-hours-care-nav-title> (2022. 7. 25. 인출)

Service Australia. (2022, March 3). Exemption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exemptions-for-child-care-subsidy?context=41186> (2022. 9. 28.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March 3). Residence rules: On the day you claim Family Tax Benefit Part A and Part B you must meet the residence rul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sidence-rules-for-family-tax-benefit?context=22151> (2022. 11. 21. 인출)

Service Australia, (2022, March 3). Residence rules: To get Child Care Subsidy you or your partner must meet the residence rul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sidence-rules-for-child-care-subsidy?context=41186> (2022. 9. 28.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1). FTB Part A eligibil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eligibility?context=22151> (2022. 8. 2.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1). How much you can get: Parental Leave Pay is based on the weekly rate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You can get it for up to 18 weeks, which

is 90 payable day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parental-leave-pay-you-can-get?context=22191> (2022. 7. 29.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1). Income test for FTB Part B,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test-for-family-tax-benefit-part-b?context=22151> (2022. 8. 2.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6). FTB Part A payment rat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payment-rates?context=22151> (2022. 8. 2.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July 24). FTB Part B eligibil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b-eligibility?context=22151> (2022. 8. 2.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1). The type of child care you use affects i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type-child-care-you-use-can-affect-child-care-subsidy?context=41186> (2022. 8. 2.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2). Dad and Partner Pa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dad-and-partner-pay> (2022. 8. 25.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5). Meeting the income test: To get Dad and Partner Pay you must meet an income tes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meeting-income-test-for-dad-and-partner-pay?context=22136> (2022. 8. 25.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August 10). Support for grandparent carer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support-for-grandparent-carers?context=22151> (2022. 8. 10. 인출)

Services Australia. (2022, September 7). Income test for FTB P

-
- art 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test-for-family-tax-benefit-part?context=22151> (2022. 11. 21. 인출)
- Services Australia. (2022, November 11). Meeting the income test: To get Parental Leave Pay, you must meet an income tes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meeting-parental-leave-pay-income-test?context=22191>(2022. 7. 29. 인출)
- Services Australia. (2022, November 17). Parental Leave Pa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parental-leave-pay> (2022. 7. 29. 인출)
- Services Australia. (2022, November 29). Changes if you get family payment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hanges-if-you-get-family-payments?context=22191#:~:text=On%201%20July%202023%2C%20Parental,130%20days%20\(26%20weeks](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hanges-if-you-get-family-payments?context=22191#:~:text=On%201%20July%202023%2C%20Parental,130%20days%20(26%20weeks) (2022. 11. 29. 인출).
- Services Australia. (n.d.).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pandemic-leave-disaster-payment> (2022. 10. 31. 인출)
- Sheppard, Monika. (2015, June 23). Child care in Australia: a quick guide. Research paper series, 2014-15),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library/prspub/3910092/upload_binary/3910092.pdf;fileType=application/pdf (2022. 8. 4. 인출)
- The Public News(2021. 1. 21). [정책-외국정책사례]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시사점,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3>, (2022. 7. 25. 인출).
- Transforming early Education And Child Health Research Centre. (n.d.). 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

Visiting (MECSH) Program, https://www.westernsydney.edu.au/teeach/research/beacon_2/maternal_early_childhood_sustained_home_visiting_mecsh_and_right_at_home (2022. 10. 31. 인출)

[법령]

A 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 Act 1999, No. 80, 1999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2C00125>
(2022. 8. 2. 인출)

Child Care Act 1972, No. 121, 1972 (1972).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512> (2022. 8. 2. 인출)

Child Care Subsidy Minister's Rules 2017 (2017, November 7).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L01464>
(2022. 8. 2. 인출)

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s 2018
(201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C00501> (2022. 8. 2. 인출)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 No. 69 of
2010 (2010). <https://content.legislation.vic.gov.au/sites/default/files/2022-04/10-69aa015%20authorised.pdf>
(2022. 7. 25. 인출)

Family Assistance Legislation Amendment (Jobs for Families
Child Care Package) Act 2017 (2017).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A00022> (2022. 8. 2. 인출)

Paid Parental Leave Act 2010, No. 104, 2010 (2010).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1C00447> (2022. 8. 2. 인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 No. 191, 1999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2C00204>
(2022. 8. 2. 인출)

김지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전공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 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자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통계전공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통계전공 (박사)

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강사

전.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28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

발 행 인 • 박상희

발 행 처 • 육아정책연구소

저 자 • 김지현·김자연

발 행 일 • 2022년 12월

주 소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0 9층

<http://www.kicce.re.kr>

대 표 전 화 • 02) 398-7700

팩 스 • 02) 398-7798

인 쇄 • 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ISBN 979-11-6865-025-1(93330)

정가: 8,000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제 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 (2006) | 유희정
- 제 2권 스웨덴의 육아정책 (2006) | 문무경
- 제 3권 호주의 보육정책 (2007) | 서문희
- 제 4권 영국의 육아정책 (2007) | 문무경
- 제 5권 미국의 육아정책 (2008) | 조은경 · 김은영
- 제 6권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2008) | 신나리 · 조혜주
- 제 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 (2009) | 이윤진 · 송신영
- 제 8권 프랑스의 육아정책 (2009)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 제 9권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2010) | 김은설 · 김문정
- 제10권 독일의 육아정책 (2010) | 이명환 · 박수연
- 제1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II) (2011) | 유해미 · 유희정 · 장경희
- 제12권 대만의 보육정책 (2011) | 이정림 · 邱志鵬
- 제13권 호주의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2013) | 서문희 · 이혜민
- 제14권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2013) | 이정원 · 이세원
- 제15권 스웨덴의 육아정책(II) (2015) | 최윤경 · 김윤환 · 이혜민
- 제16권 아일랜드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 (2015) | 최은영 · 장혜진 · 송신영
- 제1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II) (2015) | 이윤진 · 정도삼
- 제18권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2016) | 권미경 · 이강근
- 제19권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2016) | 강은진
- 제20권 덴마크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2017) | 양마선
- 제21권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2017) | 도남희
- 제22권 중국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 (2018) | 이윤진 · 백미화
- 제23권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2018) | 이윤진 · 정재훈
- 제24권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2019) | 장경희 · 유해미
- 제25권 영국의 육아정책(II) (2020) | 문무경
- 제26권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II) (2020) | 이정원 · 권미경
- 제27권 미국의 육아정책(II) (2021) | 조은경 · 김은영

Child Care

Education

Polic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398-7700 Fax. 02-398-7798



9 791168 650251
ISBN 979-11-6865-025-1